

#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모임 보고서-

2020. 12.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목 차

<b>제1장 연구의 개요</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6
<b>제2장 재정환경변화와 대응</b> .....	<b>7</b>
제1절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정운용방식 .....	9
1. 재정환경의 변화 .....	9
2. 현행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	10
3. 새로운 재정운영방식의 모색 .....	11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투자 .....	14
1. 패러다임의 변화와 위기 .....	14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	23
<b>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b> .....	<b>31</b>
제1절 문제제기 .....	33
제2절 이론적 배경 .....	34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34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 .....	35
3.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기준 .....	36
제3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 .....	38
1. 주요 구성 .....	38
2. 재정 규모 .....	38
3. 지방세 수입 규모 .....	39

4. 자원배분 전망 .....	40
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42
6. 담당조직 및 인력 .....	43
제4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 .....	45
1. 주요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	45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와의 연계성 .....	56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	57
4. 세수입 예측의 적절성 .....	64
5. 평가 및 환류 체계 .....	71
제5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	72
1.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제도 도입 .....	72
2.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제도 도입 .....	72
3.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 검증 제도 도입 .....	73
4. 세입추계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	74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제도 도입 .....	74
6.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75
7. 실국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공무원 컨설팅 실시 .....	76
8.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인력 확보 .....	76

## 제4장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시 원가산정 ..... 77

제1절 문제 제기 .....	79
제2절 보조금 제도 .....	80
1. 보조금 개요 .....	80
2.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현황 .....	87
제3절 민간지원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	98
1.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문제점 .....	98
2.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문제점 .....	100
3. 시사점 분석 .....	106
제4절 충청남도 보조금 원가산정 기준 .....	108
1. 기준(안) .....	108
제5절 원가산정기준 적용 제도화 방안 .....	125

1.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민간보조금 편성기준 근거 마련 .....	125
2.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매년) .....	125
3. 시군에 보조되는 도비 보조금 동기준 적용 .....	125

## 표 목 차

[표 1] 충남도 세입세출결산 .....	0
[표 2] 충남도 세입·세출 결산(2018~2019) .....	11
[표 3] 세계 인구 증가 예측 .....	14
[표 4] 세계무역과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추이 .....	16
[표 5] 충청남도의 경제사회 지표 .....	17
[표 6] 불평등 지표 .....	22
[표 7] 투자심사 결과 .....	27
[표 8]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	29
[표 9]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정 규모 .....	33
[표 10]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세입 규모 .....	33
[표 11]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지방세 수입 전망 .....	34
[표 1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원배분 전망 .....	34
[표 13]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분야별 투자소요 .....	34
[표 1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34
[표 15]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34
[표 16]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년)의 분야별 소요재정 .....	64
[표 17]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64
[표 18]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 분석 .....	74
[표 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74
[표 20]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 분석 .....	81
[표 21]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15-2019)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94
[표 2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문화 부문 사업 .....	95
[표 2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95
[표 2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관광 부문 사업 .....	95
[표 25] 제2차 충남체육발전중장기계획(2019-2023)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	95
[표 26]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체육 부문 사업 .....	95
[표 27]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연계 현황 .....	97
[표 28]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8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9

[표 30]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2019년 예산 간 차이(일반회계) .....	66
[표 3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 예산서 간 세부사업 비교(문화및관광 분야) .....	16
[표 32]	충청남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 비교 .....	66
[표 33]	충청남도 2017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	67
[표 34]	충청남도 2018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	68
[표 35]	충청남도 2017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비교 .....	69
[표 36]	충청남도 2018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비교 .....	70
[표 37]	국고보조금의 목적 .....	80
[표 38]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	81
[표 39]	용어의 구분 .....	82
[표 40]	지방보조금의 분류 .....	82
[표 41]	지방보조금의 종류(13개 통계목) .....	83
[표 42]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	85
[표 43]	2018-2020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별 현황 .....	87
[표 44]	2018-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별 현황 .....	88
[표 45]	2018-2019년 지방보조금(공공단체보조) 집행 현황 .....	98
[표 46]	2018-2019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집행 현황 .....	99
[표 47]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내역(2020년 기준) .....	99
[표 48]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리스트 .....	92
[표 49]	민간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리스트 .....	96
[표 50]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 리스트 .....	97
[표 51]	보조사업 집행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및 개념 .....	101
[표 52]	보조금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비율 .....	103
[표 53]	보조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	103

## 그림 목 차

[그림 1] 주요 국가 GDP 증가 추이 .....	5
[그림 2] 주요 국가 인구 증가율 추이 .....	5
[그림 3] 충청남도 고령인구 비율 .....	8
[그림 4] 충청남도 생산 대비 분배소득 .....	9
[그림 5]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	20
[그림 6] 피케티의 경고 .....	21
[그림 7] 패러다임 위기의 구조 .....	23
[그림 8] 지방재정 개관과 행안부의 지방재정관리 수단 .....	24
[그림 9]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	26
[그림 10] 투자심사기준 .....	28
[그림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 일정 .....	8
[그림 1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조직 .....	4
[그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5
[그림 14] 보조금 지원 흐름도 .....	8
[그림 15] 2018년~2020년 지방보조금 사업 추세 / (좌)합계 (우)순도비보조 .....	8
[그림 16] 2018년~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별 추이 .....	8
[그림 17]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보조금(공공단체/민간단체) 변화 .....	9
[그림 18]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A보조사업자 산출내역서 .....	8
[그림 19]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보조사업자 B 산출내역서 .....	9
[그림 20] 부정수급의 유형화 .....	100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 재정투자의 건전성 및 생산적 관리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루는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중앙정부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실시할 계획임
  - 2019~2020년의 2년간에 걸쳐 지방소비세율이 10% 인상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확대됨
- 재정분권 강화로 인해 충청남도는 향후 국고지원사업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자체사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2,000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sup>1)</sup> 이는 충청남도가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재정투자사업의 규모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재정분권 구조 변화 외에도 국가경제의 성장은 지방재정의 자연적 증가를 가져다주고 있음
- 향후 충청남도가 다루는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투자를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 재정투자관리 관련 개선방안 필요

-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지방재정 투자관리 관련된 제도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함

1)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3.57조원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된 자체재원을 통해 전환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함. 지방소비세 인상액과 균특사업 이양규모를 비교할 경우, 충청남도의 실질적인 재정증가액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자체재원의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신장될 것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다년도 예산임
- 충남도의회는 그 동안 충남도 예산승인과 결산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를 더욱 발전시켜 충남도 재정투자에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재정투자관리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재정투자관리제도의 제반 규정 및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실제 재정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민간보조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충청남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 되고 있으나 보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사업물량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어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별, 시기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보조금의 속성상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조금 예산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부실 보조사업의 요인이 되거나 또는 예산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주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실태를 분석하고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 기준 또는 단가산출 요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충청남도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과 재정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재정투자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토론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터득케 함

- 충청남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투자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민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 예정임
- 한편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나 관련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 내용적 범위

-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모색
-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투자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시 원가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 2. 연구의 방법

#### ■ 문헌자료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민간보조금 관련 문헌 수집과 분석
- 지방재정투자 관련 문헌 검토

#### ■ 통계자료 분석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재정 자료 분석
- 충청남도 민간보조금 관련 재정 자료 분석

#### ■ 전문가 자문

- 재정 전문가 대상 자문

## 제2장 재정환경변화와 대응

제1절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정운용방식

---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투자

---



## 제1절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정운용방식

### 1. 재정환경의 변화

#### ■ 자치분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중앙부처, 공공기관, 산하단체 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청와대 기능 축소
- 전제: 자기결정권 증대에 따른 책임성 수반, 학습이 중요, 이를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실무, 이론에 능한 master가 필요)

#### ■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 전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가의 세수 증가폭이 격감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수요의 증대
-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시 기존 사업 축소, 신규사업중단, 경상비 일률삭감(급여, 용역비 등) 조치
  -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玉石의 구분이 필요
  - \* 중요한 자본시설에 대한 유지비 삭감이 초래할 결과를 분석
  - 국채, 지방채 등 새로운 재원확충방안의 모색과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 ■ 4차 산업혁명

- 우리나라 문제가 생기면 IT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려고 함: 더 많은 조직이 생기고, 원래의 의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빅데이터에 기반한 경제(data-driven economy), GIS” 등을 활용한 Simulation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evidence의 축적

#### ■ 예기치 못한 위기의 도래

- 위기관리의 일상화: 코로나19, 자산노후화
- 앞으로 행정체제, 재정운영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



- 외적 연계(linkage): 정치·경제·사회 등
- 재정조직과 사업부서와의 내적 연계, 재정공무원의 전문성
- => 기존의 사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 2. 현행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 ■ 세입

- 국·도비 확충: 지방비 매칭의 부담, 지역의 우선순위와의 조화
- 보전재원: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화
-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의존재원의 과다로 인한 재원확충 노력의 한계(특히 지방교육재정)

[표 1] 충남도 세입세출결산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세입	6,272,415	7,130,837	6,032,264	6,297,251	7,070,013	3.0
세출	5,577,722	6,304,840	5,593,413	5,880,079	6,892,638	5.4
채무상환	0	0	0	0	0	0
결산상잉여금 (증감)	694,693 -235,717	825,997 -131,304	438,852 (△387,145)	417,172 (△21,680)	177,375 (△239,797)	△28.9
이월금 (증감)	182,809 -34,750	208,315 -25,506	261,649 -53,334	299,491 -37,842	145,562 (△153,929)	△5.5
보조금 집행잔액 (증감)	2,548 (△2,812)	13,730 -11,182	4,270 (△9,460)	4,007 (△263)	9,936 -5,929	40.5
순세계 잉여금 (증감)	509,336 -203,779	603,952 -94,616	172,932 (△431,020)	113,674 (△59,258)	21,878 (△91,796)	△54.5

### ■ 세출

- 코로나 대응 예산 증가
- 국·도비 매칭비

-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 특별회계/기금의 관행적 운영
- => 투자사업: 사업부서의 주도,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검토가 불충분
- => 지방보조금: 사업부서의 주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

[표 2] 충남도 세입·세출 결산(2018~2019)

구 분	2018결산 (A)	2019						전년대비 증감율 [(C-A)/A]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구성비	
합 계	54,078.10	57,400.00	62,023.40	65,011.90	63,125.60	97.1	100	16.7
1. 인건비	3,104.30	3,392.80	3,461.50	3,462.5	3,414.20	98.6	5.4	10
2. 물건비	1,266.80	1,302.70	1,324.80	1,390.60	1,312.10	94.4	2.1	3.6
3. 경상이전	28,565.50	31,095.80	32,366.60	32,415.40	32,341.00	99.8	51.2	13.2
4. 자본지출	15,703.40	15,271.50	18,748.60	21,678.50	20,041.00	92.4	31.7	27.6
5. 내부거래	5,334.60	5,522.80	5,917.40	5,917.40	5,917.40	100	9.4	10.9
6. 예비비 및 기타	103.5	814.4	204.6	147.4	99.8	67.7	0.2	△3.6

### ■ 3. 재정운영의 전문성 한계

- 예산부서의 사업부서에 대한 내부통제: 순환보직, 전문성의 한계
- 재정관련위원회의 전문성 한계:
-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

## 3. 새로운 재정운영방식의 모색

### ■ 중앙의 정책변화에 대처

- 지방교부세 감액
  -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조정: 본예산 교부세 반영비율 대폭 상향
  - 고용·일자리 정책 적극 반영
  - 재난안전분야 투자 보정수요 신설



- 취약계층 보호구역 지정
- 보통교부세 페널티: 불용액(중위값 이상 11억-77억 감액), 이월액
- 지방채
-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 ■ 세입의 확충

- 지방세: 감면 축소
- 세외수입
- 지방채 활용
- 보전수입/내부거래: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재정안정화기금

### ■ 세출의 구조조정

- 경상비의 일률적 삭감이 아닌 玉石의 구분
    - 불요불급한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삭감
  - 투자사업의 조정: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검토
  - 지방보조금 평가의 강화
- \* 성과지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고도의 전문적 재정운영으로 코로나 이후의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 ■ 재정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순환보직의 개선, 전문관제의 도입
- 재정관련위원회의 전문가 보강
- 예산과 결산담당기구의 연계: 결산업무를 회계과가 아닌 예산부서로 통합 운영, 예산부서를 명실상부한 재정운영의 control tower
  - 예) 공공재정관리사

### ■ 사회적 대타협

- 우리에게만 자신이 항상 옳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인지하는 대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울러, 사실이나 지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내야 한다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방식과 같은 일률적인 사업 축소에 그치지 않고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재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투자

### 1. 패러다임의 변화와 위기

#### ■ 패러다임의 변화

- 전세계의 인구는 2019년 UN의 조사에 따르면, 1930년 20억명에서 2019년 77억명으로 3.85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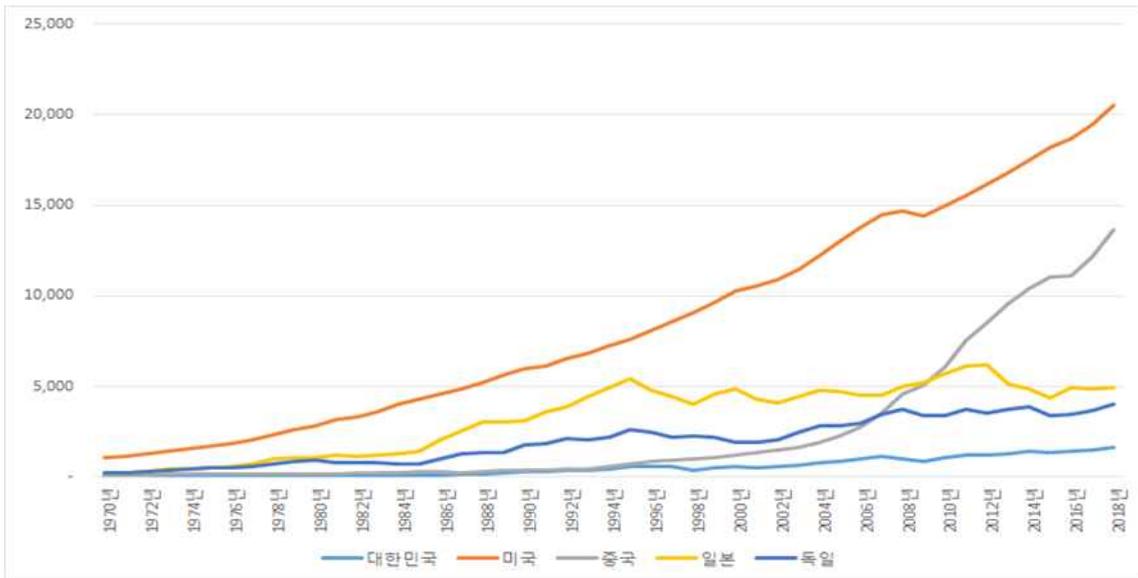
[표 3] 세계 인구 증가 예측

Year	1930	1960	1975	1987	1999	2011	2025	2050
인구(명)	20억명	30억명	4억명	5억명	6억명	7억명	7.98억명	9.38억명

자료 : Source: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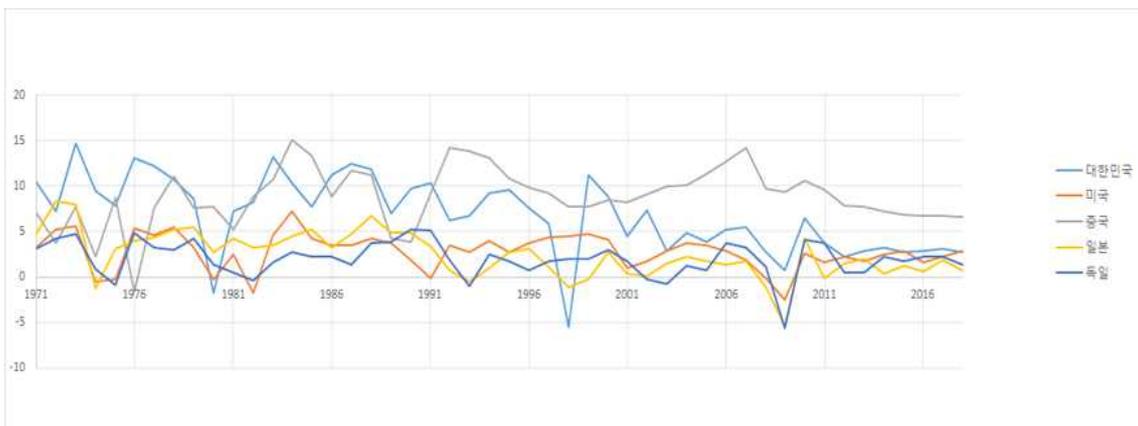
- 2050년에는 14억명이 증가하여 94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인구는 13.5억명
- 인구 증가는 천연자원/에너지 부족, 환경훼손, 물부족, 성장 압력에 영향을 미침
- 과연 이러한 여건이 지속가능할까?
- 1970년 90억 불(명목기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1조6천2백억불로 세계 12위 (World Bank)에 이르렀으며 지난 50년 사이 180배 성장하였음
- 같은 기간 중국은 147배, 일본 23.4배, 미국 19배, 독일 18.6배 성장하였는데 특히 중국은 2011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

[그림 1] 주요 국가 GDP 증가 추이



-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각각 평균 9.30%, 9.92%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1990년대 7.02%, 2000년대 4.43%로 낮아졌으며 2012년~2018년 2.96%로 같은 기간 미국 2.21%, 일본 1.04%, 독일 1.80%와 같은 저성장 경제로 변해가고 있음

[그림 2] 주요 국가 인구 증가율 추이



- 중국 역시 1990년대와 2000년대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 6.6%로 낮아지는 등 점차 선진국처럼 낮은 경제성장률로 수렴할 것이 예상됨



- 고도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고도경제성장은 비정상적이었으며 세계는 정상적인 성장률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새로운 현실(New Normal)에 적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입규모 면에서 2018년 기준 세계 7위로서 프랑스(6위)와 이탈리아(8위) 사이에 위치한 세계무역 강국 가운데 하나임 (참고: 중국 1위, 미국 2위, 일본 5위)

[표 4] 세계무역과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2018/1970
세계무역 (억불)	5,096	31,585	69,047	129,520	305,425	391,096	77배
한국무역 (억불)	27	394	1,352	3,328	8,916	11,443	422배

-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보호(주의)가 위대한 번영과 힘으로 인도할 것 (Protection will lead to great prosperity and strength)” 이라 단언한 이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정
  - 파리기후협약 탈퇴 예고(2019.11 탈퇴서 제출)

■ 충청남도 경제사회 지표

- 충청남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53,663천원으로 전국에서 2위에 해당되고, 1인당 총소득은 39,338천원으로 전국에서 4위에 해당됨
- 그러나 1인당 개인소득은 17,788천원으로 전국 12위에 해당되고, 1인당 민간소비는 15,428천원으로 전국에서 13위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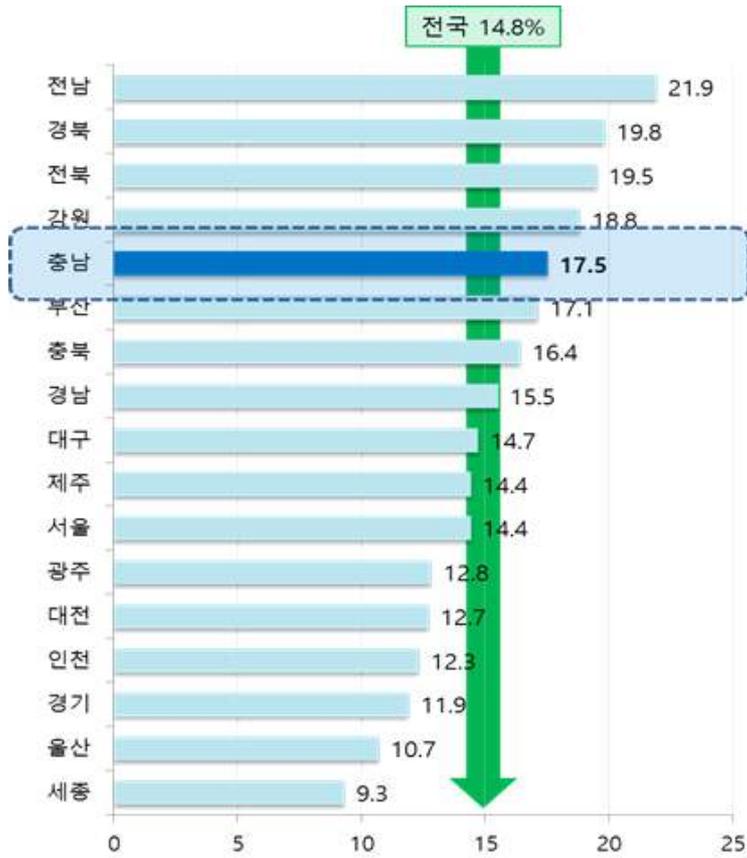
[표 5] 충청남도의 경제사회 지표

(단위: 천원)

구분	1인당 지역내총생산(순위)	1인당 지역총소득(순위)	1인당 개인소득(순위)	1인당 민간소비(순위)
서울	41,374(3)	46,715(2)	22,237(1)	20,197(1)
부산	25,650(16)	27,592(14)	18,189(8)	17,176(3)
대구	22,310(17)	26,561(16)	18,350(7)	16,826(6)
인천	30,284(11)	30,990(10)	17,884(10)	15,431(12)
광주	25,240(17)	28,759(13)	18,926(6)	17,049(5)
대전	26,533(14)	30,102(12)	19,314(5)	16,798(7)
울산	65,370(1)	52,237(1)	21,956(2)	17,946(2)
세종	40,043(7)	40,876(3)	21,404(3)	17,141(4)
경기	35,307(8)	37,588(5)	19,375(4)	16,777(8)
강원	29,925(12)	27,216(15)	17,484(13)	15,780(10)
충북	40,590(6)	31,951(8)	17,465(14)	15,088(15)
충남	53,663(2)	39,338(4)	17,788(12)	15,428(13)
전북	26,988(13)	25,710(17)	17,059(16)	14,957(17)
전남	41,076(5)	34,542(6)	17,043(17)	14,960(16)
경북	41,130(4)	33,828(7)	17,428(15)	15,332(14)
경남	32,789(9)	31,033(9)	18,011(9)	15,687(11)
제주	31,470(10)	30,863(11)	17,816(11)	16,191(9)
전국	35,831	35,977	19,204	16,996

- 충청남도의 고령인구비율은 2018년 기준 17.5%로 전국 평균 14.8%보다 높으며 전남, 경북, 전북, 강원에 이어 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음

[그림 3] 충청남도 고령인구 비율



- 충남과 같이 지역생산(GRDP)은 높으나 분배소득은 낮은 비율(0.76)을 보이는 지역은 울산(0.66)으로 두 지역의 공통점은 대기업의 대규모 생산설비가 입지해 있다는 것임

[그림 4] 충청남도 생산 대비 분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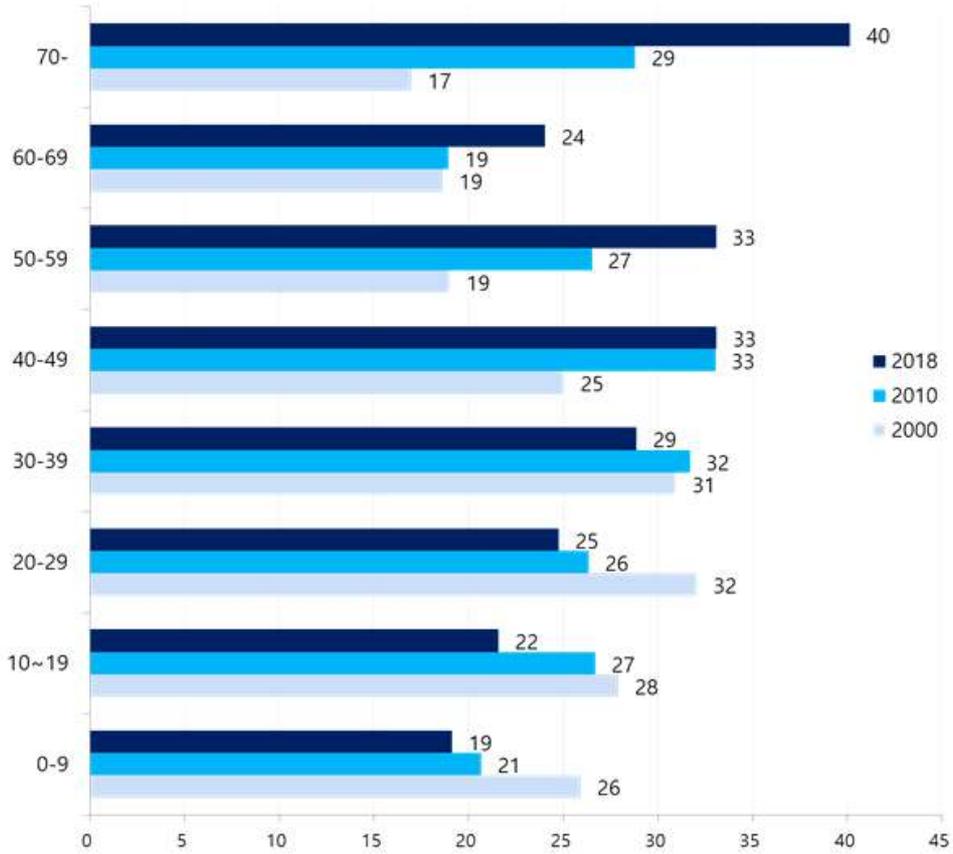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 1,92만명에서 2018년 2,12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하여 전국평균 인구증가율 0.42% 대비 높은 인구증가율 보이고 있으나,
- 2000년, 2010년, 2018년 각각 40대 미만의 인구 비중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반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가 가속화 하고 있음



[그림 5]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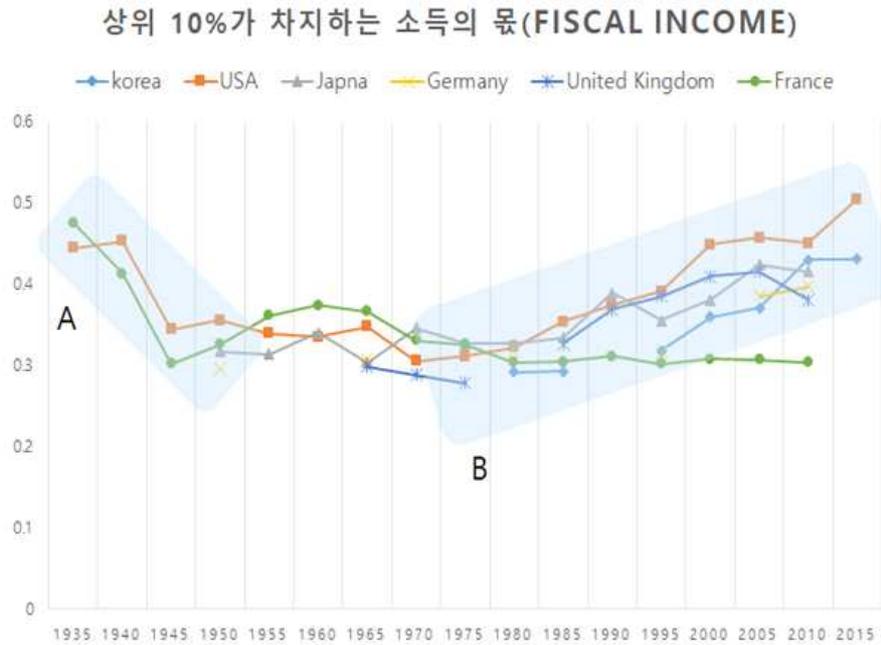
(단위 : 만명)



### ■ 피케티의 경고

- 2014년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기존 경제학자들이 논의해왔던 ‘성장이나 분배냐’의 쟁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

[그림 6] 피케티의 경고



- 선진국들의 과거 세무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10% 혹은 1% 부자가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음
- 과거 50년의 성장기의 출발점이 된 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해짐’은 인류가 최악의 희생을 치른 전쟁의 결과였음을 상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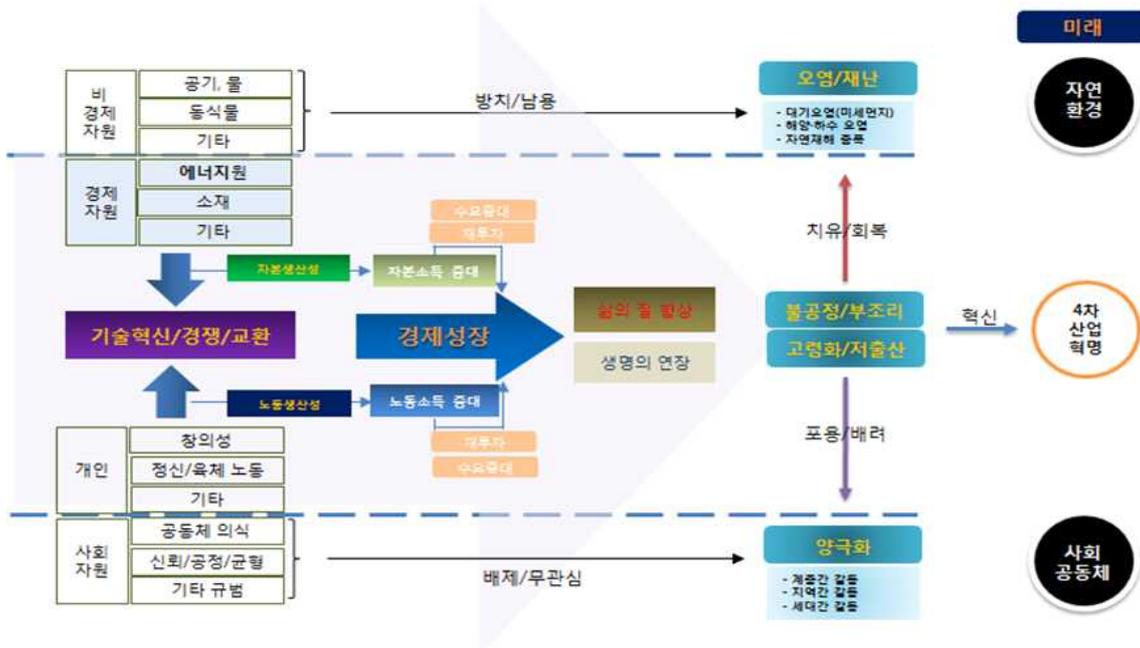
[표 6] 불평등 지표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낮은 불평등 (이상적인 사회)	중간 정도 불평등 (스칸디나비아 1970~1980년대)	중간정도보다 높은 불평등 (유럽 2010년)	높은 불평등 (미국 2010년)	매우 높은 불평등 (유럽 1910년)
상위 10퍼센트 (상류층)	30%	50%	60%	70%	90%
상위 1퍼센트 ('지배층')	10%	20%	25	35	50%
다음 9퍼센트 ('부유층')	20%	30%	35	35	40%
중간 40퍼센트 ('중산층')	45%	40%	35%	25%	5%
하위 50퍼센트 ('하류층')	25%	10%	5%	5%	5%
해당되는 지니계수 (종합적 불평등 지수)	0.33	0.58	0.67	0.73	0.85

■ 자연의 경고

- 지구 탄소분포는 식물 6,500억 톤, 대기 7,300억 톤, 석유 1,450억 톤, 석탄 6,320억 톤, 동토 1조 6,720억 톤(44%)으로 총 3조 8,290억 톤임
- 연간 탄소배출 65억 톤, 교토의정서 감소목표 연 2억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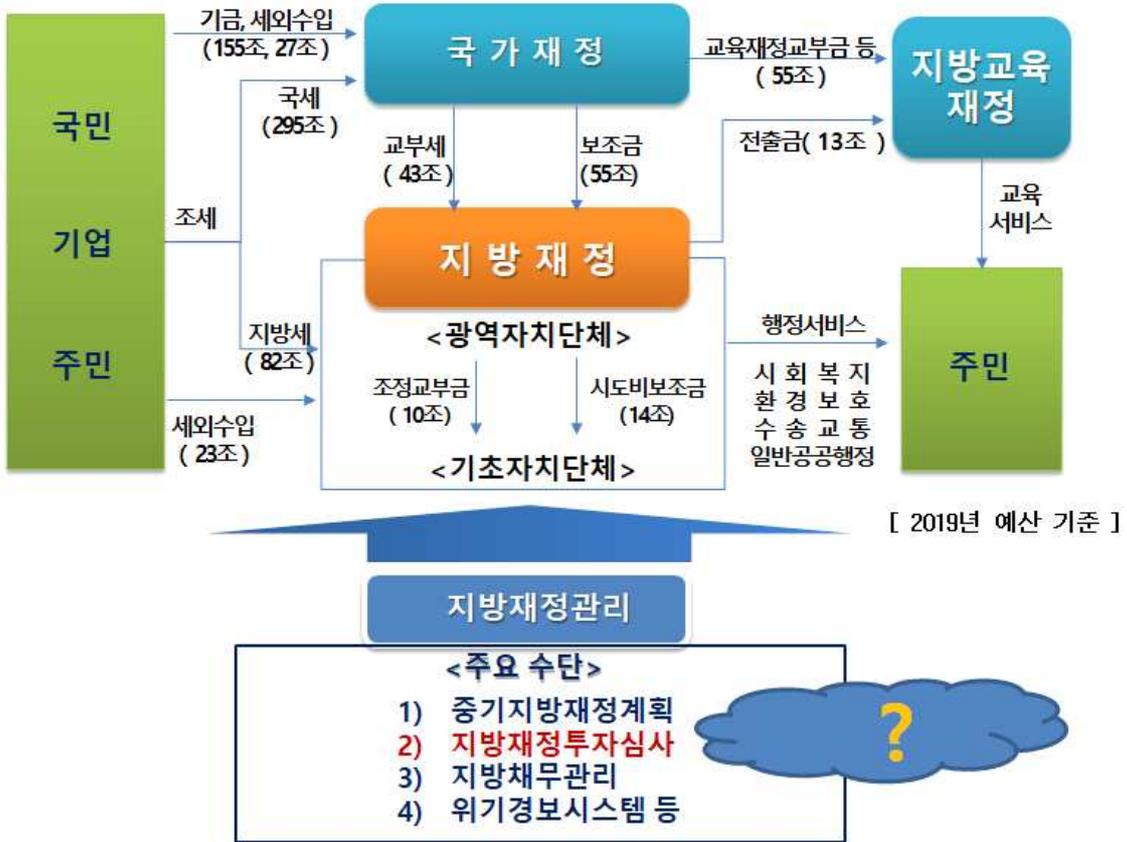
[그림 7] 패러다임 위기의 구조



##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 지방재정 개관과 행안부의 지방재정관리 수단

- 지방재정은 국민, 기업,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됨
- 이러한 재정은 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활동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됨
-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활용됨



[그림 8] 지방재정 개관과 행안부의 지방재정관리 수단

###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목적

-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강화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재정 지출규모가 중앙재정 지출규모 초과
  -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약 231조원(국가 총재정 사용액의 46.4%), 2019년 기준
  - 지방재정 지출구조: 정책사업에 약 192조원(약 83.3%) 사용
  -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 관련된 정책사업비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 부각
- 재정투자사업 추진 시 정치적 • 행정적 추진 경향: 객관적인 타당성검토 소홀
  - 투자심사 등 필수적인 공적 절차 생략
  - 사업수행 관리• 감독 기준 부재, 타당성 검토결여, 총사업비 증가와 특혜시비, 도덕적 해이 등으로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감사원 자료)
  -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유도 위한 대안제시 필요

■ 충청남도 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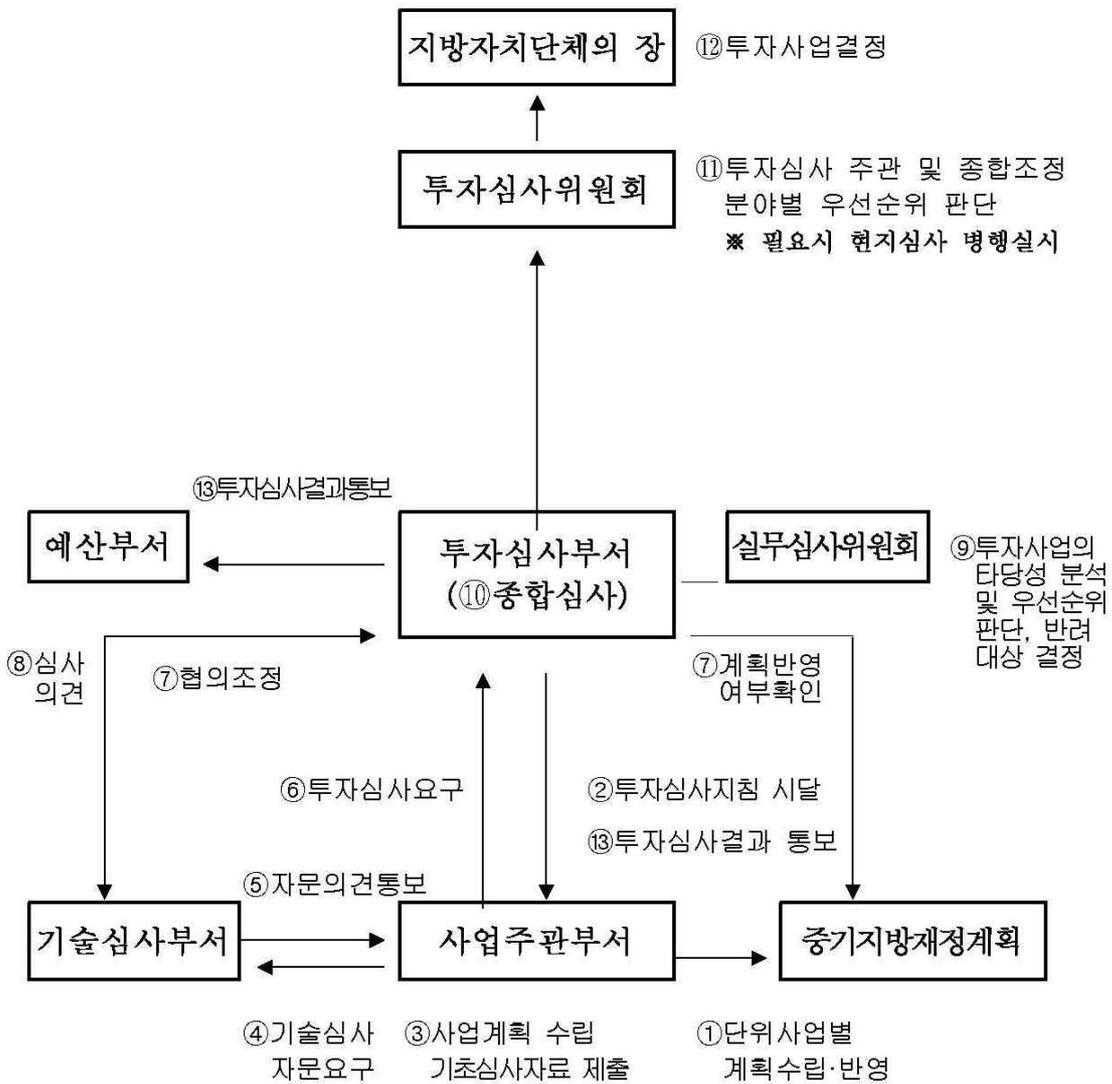


- ① 공문 접수: 도/시군 사업부서(투자심사의뢰서 작성 후)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공문의뢰
- ② 사업비검증: 도/시군 예산부서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조

직 및 예산 인프라 정비 후 지원 )

- ③ 사전 검토: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 도/시군 사업부서(1차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 시군 예산담당부서 제출
- ④ 합동 집무: 충남도청 예산담당관 재정지원팀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최종검토 공문 의뢰 -> 최종 검토의견서 제출

■ 투자심사절차



[그림 9]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p.29

■ 투자심사 결과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방재정법 37조 2)
  - 현재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 도 투자심사위원회 공식명칭: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표 7] 투자심사 결과

투자심사	해당 사항	추진 여부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도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 재심사 대상사업 유형 및 요건

재심사 유형	재심사 요건(내용)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재원계획 변경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국비, 시도비)으로 자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지자체서 ->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 추진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 투자심사기준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종합적인 평가 · 분석



[그림 10] 투자심사기준

## ■ 사업유형

- 일반투자사업
  -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

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 청사사업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제2 항제2호의 공용재산 )
- ex)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

[표 8]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기관

사업유형	사업주체	심사기관		
		시군	충청남도	중앙
일반투자사업	시군	20억원 ~ 60억원 미만	60억원 ~ 200억원미만	200억원 이상
	도		40억원 ~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청사신축	시군	20억원 미만	20억원 ~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도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문화체육시설 신축	시군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도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홍보관사업	시군	3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도		5억원 ~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	시군	1억원 ~ 3억원 미만	3억원 ~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도		3억원 ~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문화체육시설신축

- 문화·체육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
-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등을 포함하여 산정

○ 홍보관사업

- 자치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행사성사업

- ①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 ②공연·축제·문화행사
- ③위로·위문행사
-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 ⑤각종체육대회행사
- ⑥교양강좌
- ⑦각종기념행사
- ⑧지자체주관 국제행사
- ⑨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sup>2)</sup>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이론적 배경

---

제3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현황

---

제4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실태 분석

---

제5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

2) 제3장은 충남연구원 2019년 현안과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최용선)을 정리한 내용임



## 제1절 문제제기

### ■ 중장기적 재정계획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장기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분야별로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필요

### ■ 우리나라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건전성을 위해 지난 1988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제도 도입
- 이후 1992년에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개선사항들이 마련됨

###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상 문제점

- 여러 선행연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함
- 충청남도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미흡, 엄격한 수립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필요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이론적 배경

###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 개념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단년도 예산임
- 예산의 시계를 5년으로 설정하지만, “매년 계획 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새로운 5년 계획을 세우는 연동계획임” (허명순 외, 2003: 11)
- 경제·사회적 여건에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도 포함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 ■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 첫째,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발전계획, 정책우선순위 등을 반영함으로써,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2018: 1)
-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급격한 정책변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이원희 외, 2010: 9)
- 넷째, 자원배분에 비합리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될 수 있음
- 여섯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

정적 연계성을 확보함” (행정안전부, 2018: 1)

- 일곱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의 기초로 운영될 수 있음(이원희 외, 2010: 10)
- 여덟째, “재정 공시 및 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성과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원희 외, 2010: 10)

##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므로, 지역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투자우선순위, 향후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고 가용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계획기간 중 동원 가능한 재정수입을 전망하여 가용투자재원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시작됨
- 다음 단계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발전목표와 분야별 기본지표를 설정하고 가용투자재원을 활용하여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함
- 자원배분 과정에서 가용투자재원과 분야별 지출소요를 비교한 결과, 부족 재원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이상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논리적 과정을 의미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실무적 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시작됨
- 지방자치단체는 부여받은 수립 기준에 따라 9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국고보조사업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침
-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에 보고함



자료: 행정안전부(2018). p. 40.

[그림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 일정

### 3.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하게 연계되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함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함
-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투자심사지방채발행 대상 신규사업을 필히 포함하여야 함



## 제3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

### 1. 주요 구성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의 개요,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 중기 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부록(세부사업계획서)의 순서로 구성됨
-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에서는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방향이 제시됨
-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에서는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와 계획을 제시함
-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서는 세출 분야별로 재정목표와 재정투자 규모 등이 제시됨
-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세부사업계획서가 제시됨

### 2. 재정 규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재정규모는 연평균 4.4%로 증가하여 2023년에 9조 1,5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일반회계의 연평균 신장률이 4.8%로 높고 특별회계의 신장률은 0.3% 수준으로 예상됨

[표 9]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계	77,061	79,812	84,093	87,596	91,536	420,098	100.0	4.4
일반회계	61,534	64,216	67,509	70,823	74,507	338,589	80.6	4.8
특별회계	5,525	5,454	5,416	5,458	5,597	27,450	6.5	0.3
기금	10,002	10,142	11,168	11,315	11,432	54,059	12.9	3.5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총 세입규모는 42조 98억원으로 추계됨
- 자체재원의 약 94%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연평균 4.8% 증가가 예상됨
- 이전재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계	7,706,101	7,981,159	8,409,329	8,759,590	9,153,696	42,009,875	100	4.4
자체재원	2,111,650	2,214,314	2,316,586	2,407,245	2,519,439	11,569,234	27.5	4.5
지방세수입	1,964,360	2,059,485	2,159,718	2,265,348	2,376,682	10,825,593	25.8	4.8
세외수입	147,290	154,829	156,868	141,897	142,757	743,641	1.8	0.6
이전재원	4,164,245	4,386,875	4,618,813	4,867,047	5,131,869	23,168,849	55.2	5.3
지방교부세	836,165	860,342	885,238	910,880	937,290	4,429,915	10.5	2.9
국고보조금	2,527,643	2,670,715	2,822,201	2,982,522	3,152,201	14,155,282	33.7	5.6
균특보조금	637,620	680,046	721,611	768,771	821,185	3,629,233	8.6	6.4
기금	162,817	175,772	189,763	204,874	221,193	954,419	2.3	7.8
지방채	134,800	84,800	173,081	173,080	173,082	738,843	1.8	16.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95,406	1,295,170	1,300,849	1,312,218	1,329,306	6,532,949	15.6	0.6

### 3. 지방세 수입 규모

- 「2019년~2023년」 계획기간 내 지방세 총규모는 10조 8,255억원으로 연평균 4.8% 신장될 것으로 전망됨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6조 2,438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취득세는 과세대상 및 외부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계함
-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 면허분 및 등록분 면허세 세액 신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11]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의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계	1,964,360	2,059,485	2,159,718	2,265,348	2,376,682	10,825,593	100	4.8
보통세	1,578,996	1,659,602	1,744,703	1,834,562	1,929,457	8,747,320	80.8	5.1
취득세	1,105,432	1,172,864	1,244,408	1,320,317	1,400,856	6,243,877	57.7	6.0
등록면허세	72,131	73,790	75,488	77,224	79,000	377,633	3.5	2.3
레저세	18,233	18,252	18,270	18,288	18,306	91,349	0.8	0.1
지방소비세	383,200	394,696	406,537	418,733	431,295	2,034,461	18.8	3.0
목적세	379,364	393,883	409,015	424,786	441,225	2,048,273	18.9	3.8
지역자원 시설세	108,564	110,626	112,728	114,870	117,053	563,841	5.2	1.9
지방교육세	270,800	283,257	296,287	309,916	324,172	1,484,432	13.7	4.5
지난연도수입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0.3	0.0

- 레저세는 최근 5년간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세액 신장률 및 마사회 등 사업주체 예상매출액을 적용하여 산출함
- 지방소비세는 최근의 변화 요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건축물 가격 추이 및 과세물건별 과표 증감률을 반영함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추계액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4.5%로 추계함
- 지난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 결산평균액을 감안하여 반영함

#### 4. 자원배분 전망

- 계획기간 중 중 세줄규모는 중 42조 98억원임

[표 1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원배분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계	7,706,101	7,981,159	8,409,329	8,759,590	9,153,696	42,009,875	100	4.4
정책사업	5,989,876	6,310,991	6,639,567	6,961,996	7,334,603	33,237,033	79.1	5.1
행정운영경비	422,223	435,127	443,326	455,476	467,153	2,223,305	5.3	2.5
인력운영비	403,339	414,983	423,586	435,329	447,481	2,124,718	5.1	2.6
기본경비	18,884	20,144	19,740	20,147	19,672	98,587	0.2	1.1
재무활동	1,229,192	1,170,096	1,260,055	1,272,040	1,280,118	6,211,501	14.8	1.1
내부거래지출	389,095	376,793	375,920	374,007	375,764	1,891,579	4.5	60.9
보전지출	840,097	793,303	884,135	898,033	904,354	4,319,922	10.3	2.0
예비비	64,810	64,945	66,381	70,078	71,822	338,036	0.8	2.6

- 분야별 투자 규모는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가 3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서로 이어짐
- 연평균 신장률 또한 사회복지 분야가 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3]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분야별 투자소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계	7,218,769	7,480,787	7,899,321	8,233,735	8,614,719	39,447,331	100	4.4
일반공공행정	1,390,755	1,437,305	1,610,565	1,657,252	1,794,071	7,889,948	20.0	6.5
공공질서 및안전	314,351	325,771	338,760	353,030	359,728	1,691,640	4.3	3.4
교육	346,029	357,026	367,254	378,721	390,575	1,839,605	4.7	3.1
문화및관광	332,778	303,130	241,174	233,022	274,795	1,384,899	3.5	△4.4
환경보호	404,437	414,588	388,694	383,380	388,809	1,979,908	5.0	△0.9
사회복지	2,088,910	2,368,671	2,638,786	2,785,579	2,996,613	12,878,559	32.6	9.4
보건	149,693	159,704	198,695	182,782	203,329	894,203	2.3	8.3
농림해양수산	1,140,671	1,099,641	1,099,577	1,143,450	1,213,719	5,697,058	14.4	1.5
산업· 중소기업	382,128	413,906	386,162	374,727	385,824	1,942,747	4.9	0.4
수송및교통	299,123	259,764	273,538	394,931	191,735	1,419,091	3.6	△17.4
국토및지역 개발	363,043	334,266	348,933	340,905	409,386	1,796,533	4.6	2.7
과학기술	6,851	7,015	7,183	5,956	6,135	33,140	0.1	△2.3

주) 분야별 투자수요 : 정책사업 + 재무활동비(행정운영경비, 예비비 제외)



## 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임
  - 의무지출의 유형은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로 구분됨
  - 법정지출에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있음
  -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의미하고, 이자지출은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의미함
- 충청남도 의무지출은 계획기간 중 총 30조 1,204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 42조 98억원의 연평균 증가율 4.4% 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5,552,930	5,736,698	6,039,372	6,218,967	6,572,451	30,120,418	4.2
(법정지출)	1,514,326	1,552,735	1,633,113	1,692,830	1,824,700	8,217,704	4.6
(보조사업)	3,992,729	4,173,088	4,399,134	4,519,121	4,687,845	21,771,917	4.1
(이자지출)	45,875	10,875	7,125	7,016	59,906	130,797	66.0

-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의미함
- 재량지출의 규모는 11조 8,894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분야별 재량지출의 규모를 비교하면 재정지출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분야별 재량지출 규모만으로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15]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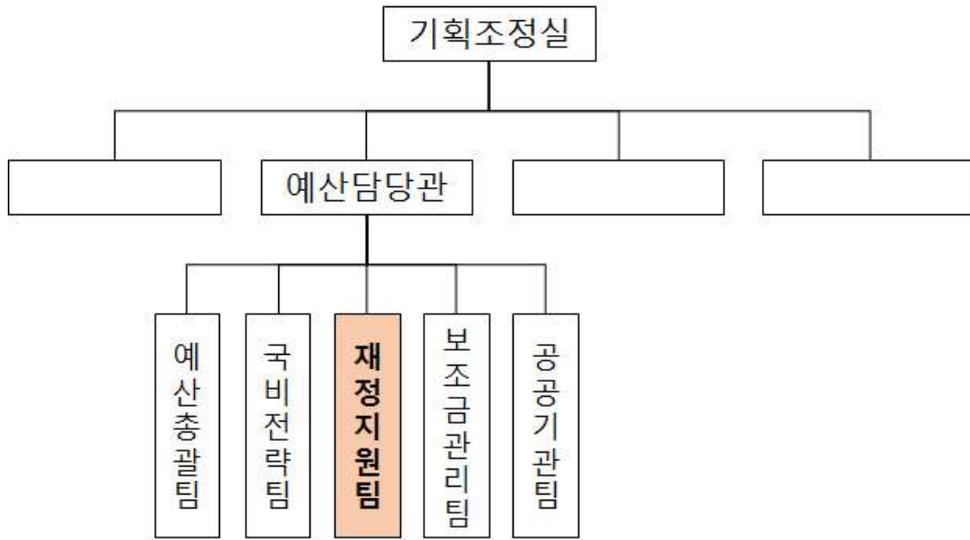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증가율
합계	2,153,174	2,244,464	2,369,957	2,540,624	2,581,238	11,889,457	4.7
일반공공행정	828,039	840,822	942,770	956,609	970,556	4,538,796	4.1
공공질서 및 안전	160,640	167,294	175,881	184,975	192,291	881,081	4.6
교육	45,639	47,688	49,219	51,146	53,172	246,864	3.9
문화 및 관광	91,190	90,840	76,325	72,285	67,570	398,210	△7.2
환경보호	7,980	7,577	4,885	5,018	4,737	30,197	△10.9
사회복지	132,546	238,652	238,053	246,199	227,970	1,083,420	18.8
보건	22,486	23,010	23,548	24,050	52,496	145,590	0.3
농림해양수산	127,224	128,956	146,238	178,013	304,639	885,070	2.1
산업·중소기업	284,564	286,222	287,116	280,391	281,164	1,419,457	3.4
수송 및 교통	185,884	165,391	182,334	301,280	107,485	942,374	2.2
국토 및 지역개발	146,342	123,975	120,633	115,059	191,703	697,712	1.7
과학기술	390	402	414	426	439	2,071	0
기타	120,250	123,635	122,541	125,173	127,016	618,615	1.5

## 6. 담당조직 및 인력

- 충청남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맡고 있음
- 예산담당관은 예산총괄팀, 국비전략팀, 재정지원팀, 보조금관리팀, 공공기관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지원팀에서 맡고 있음
- 재정지원팀은 팀장과 팀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현재 팀원 1인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재정지원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외에 지방교부세,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제, 주요재정사업 평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 지방채, 지방

재정공시제도 등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를 3인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그림 1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조직

## 제4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실태 분석

### 1. 주요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역의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됨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는 것은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역발전계획과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사업이 중장기계획상의 사업으로 구성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함
- 만약,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경우,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낮아짐
-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함
- 이러한 분야 중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계획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중장기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은 사업의 포함여부와 사업비 규모의 동일 여부를 통해 분석됨

#### ■ 사회복지 분야의 연계성 분석

-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은 충청남도 복지·보건 전체 분야의 ‘14~’23년 기간 중점 추진과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요재정을 제시함



[표 16] 복지보건증장기 계획(2013-2023년)의 분야별 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분야	계	'14~'18년					'19~'2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781,915	59,667	67,844	77,348	78,267	78,543	78,423	80,971	83,048	87,578	90,226
복지.보건 총괄	33,320	1,860	1,290	7,260	6,240	5,810	3,190	1,910	1,890	1,960	1,910
저출산. 고령화	34,822	2,511	2,967	3,284	3,367	3,486	3,079	3,379	3,469	4,566	4,714
보육.아동 청소년	31,429	2,867	3,546	3,148	3,636	3,243	2,956	3,267	3,042	3,295	2,429
장애인	606,882	47,441	55,081	57,969	58,186	59,011	61,137	63,367	65,688	68,276	70,726
여성.가족	24,407	1,945	1,569	1,733	2,296	1,993	2,490	3,149	2,732	2,930	3,570
보건.의료 · 식품안전	51,055	3,043	3,391	3,954	4,542	5,000	5,571	5,899	6,227	6,551	6,8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충청남도 복지·보건 증장기 계획수립 연구」

- ‘복지보건증장기 계획(2013-2023)’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분야와 장애인 분야에서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을 선별함

[표 17] 복지보건증장기 계획(2013-2023)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4~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 청소년 분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16,625	9,975	1,425	1,900	1,425	1,900	0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31,831	16,831	3,000	3,000	3,000	3,000	3,000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	11,018	4,578	1,120	1,280	1,280	1,300	1,460
장애인 분야	직업재활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63,893	25,130	6,477	7,060	7,696	8,388	9,142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660,449	306,535	66,643	68,646	70,703	72,822	75,100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16,785	8,175	1,578	1,650	1,722	1,794	1,866

-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되지 않아, 두 계획 간

연계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다만,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획 간 연계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표 18]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 분석

복지보건중장기 계획(2013-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 반영 여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 반영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 반영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	- 반영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직업재활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반영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 반영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 반영 여부 파악하기 어려움

-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은 향후 4년간의 충청남도의 자체사업을 제시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을 선별함

[표 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도	시군								
충남아기수당	11,300	11,300	11,335	11,335	11,398	11,398	11,486	11,486	45,519	45,519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7,975	7,965	7,975	7,965	7,975	7,965	7,975	7,965	31,900	31,860
노인일자리 지원 및 창출사업 (시니어클럽 확대)	991	2,293	1,060	2,474	1,135	2,646	1,159	2,705	4,345	10,1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1,464	8,301	1,493	8,467	1,523	8,636	1,553	8,809	6,033	34,213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확대 지원	3,103	12,409	3,200	12,800	3,300	13,200	3,400	13,600	13,003	52,009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500	0	2,500	0	2,500	0	2,500	0	10,000	0
노인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확대	1,384	1,384	1,384	1,384	1,384	1,384	1,384	1,384	5,536	5,536



- 검토 결과, 이러한 사업들 중 일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반면, 일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 분석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상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충남아기수당	- 반영됨.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상이함 - 중기계획상의 2021년과 2022년의 투자액이 계획보다 낮음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중기계획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두 계획 간 사업비 차이가 커서 반영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노인일자리 지원 및 창출사업 (시니어클럽 확대)	- 중기계획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비가 편성되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두 계획 간 사업비 차이가 커서 반영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 중기계획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편성되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두 계획 간 사업비가 동일하지 않음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확대 지원	- 반영되지 않음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 반영됨.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상이함 - 그러나 중기계획상의 사업비가 계획보다 많음
노인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확대	- 반영되지 않음

-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통해 복지보건 분야의 중장기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됨에 따라 분야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40억원 이상 사업이 100개 이상 제시되고 있어 중장기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연계성 분석

-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 체육, 관광의 세부 부문으로 구분되어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충청남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2015-2019)’ 에 제시된 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을 선별함

[표 21] 충청남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2015-2019)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 및 지원	235	0	118	117	0	60	59	58	58
충남형 예술창작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80	0	40	40	0	20	20	20	20
충남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285	89	58.8	137.2	33.3	11.7	80	80	80
지역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	100	12	42	46	12	22	22	22	22
문화시설의 내실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140	0	70	70	0	35	35	35	35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활성화	70	0	40	30	0	17.5	17.5	17.5	17.5
충남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525	83	221	221	104	107	106	106	102
문화예술 기반형 기업 육성 및 지원	90	0	28	62	0	22.5	22.5	22.5	22.5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100	0	50	50	0	16	20	28	36
생애주기별 생활문화 활동 지원	120	0	60	60	0	30	30	30	30
문화예술 치유형 복합센터(힐링콘텐츠센터) 구축	115	0	60	55	0	28.8	28.8	28.7	28.7
문화나눔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162	119	11	32	29	31	32	34	36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98	48	35	15	19	19	20	20	20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 문화 형성	80	0	40	40	0	20	20	20	20
주민참여형 문화특화지역 조성	170	58.4	41.7	69.9	1	42.3	42.3	42.3	42.1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160	0	80	80	0	40	40	40	40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마케팅 활성화	90	0	45	45	0	22	24	22	22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65	0	32.5	32.5	8	14	14	14	15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65	0	32.5	32.5	10	12	12	15	16
문화재 사전예방 체계구축 및 정비 체계화	153	75.8	38.7	38.5	23.4	24.6	35	35	35
미래지향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1540	788	385	367	300	300	312	312	316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및 합리적 보존	850	595	127	128	113	170	180	180	207
백제왕도 복원을 위한 발굴·정비사업	800	560	120	120	0	200	200	200	200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	1280	584	208.8	487.2	33.3	0	86.7	580	580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활성화	124	20.4	103.6	0	0.5	4.5	40.5	37.5	41



구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									
충남 문화유산 DB기반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창작 활성화	50	0	50	0	3.5	6.5	13.5	13.5	13
충남 문화자원 글로벌 콘텐츠 개발	100	76	24	0	0	0	33	33	34
ICT 문화융합 창작창의 지원센터	125	45	75	5	0	6.5	62.5	27.5	28.5
충남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	64	0	56.5	7.5	0	6	25	16	17
예술과 과학·기술·전통이 융합된 Art & Technology 프로젝트	48	23	23.9	1.1	0.9	0.9	16	16.1	14.1
지역 대학 특성화 사업 및 공동 프로젝트 지원	44	26	18	0	0.5	0.5	13	13	17
충남 문화콘텐츠 마켓 설치 및 운영	51	0	51	0	0	0	23	14	14
농어촌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사업	83	0	41.5	41.5	0	2.4	21	27	32.6
문화예술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	43	0	29	14	0	0	17.8	12.8	12.4
공주·부여 역사고도 문화관광 도시조성 및 관광상품 육성	212	106	31.6	74.4	0	3	103	103	3
천안·아산 문화예술 관광도시 조성 및 거리축제 도입	114	55	18.4	40.6	0	2	52	55	5
내포·유교문화권 문화관광 마을 육성	122.5	61.3	18.3	42.9	52.5	7.5	55	7.5	
주민 생활권 내 유·무형 역사자원에 대한 문화향유 및 관광 명소화	106	53.2	16.4	36.4	0	26.5	26.5	26.5	26.5
문화유산과 경관을 배경으로 한 예술공연 활성화 및 장소마케팅 사업	115	100	12.5	2.5	1	56	56	1	1

- 이상의 사업들이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에 제시된 31개의 문화 부문 사업과 동일한지, 상위사업으로 연계되었는지 등을 살펴봄

[표 2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문화 부문 사업

구분	총사업비	2019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13,894	2,617
통합문화이용권(시군경상)	22,535	4,097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8,400	3,200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4,390	2,797
충남문화재단 운영	17,958	3,383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9,599	1,808
학교예술강사 지원	4,197	791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8,591	1,618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5,352	1,008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5,575	1,050

공립예술단 운영	42,792	8,060
지역예술 진흥	6,363	1,199
충남예술제	531	100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9,886	1,862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시군경상)	4,785	1,305
충남공예품대전	531	100
문화시설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0,087	1,900
문예회관 리모델링	4,401	3,267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	44,500	5,400
문예회관 리모델링	5,459	1,887
전통사찰 보수정비(시군자본)	7,800	1,800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82,292	15,500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6,345	1,195
문화재 돌봄사업	11,549	2,090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273	2,500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6,546	5,000
문화재 야행 사업	5,549	1,248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4,130	778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726	1,078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자본)	102,551	19,316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경상)	3,230	608

- 우선, 두 계획 간 사업명칭의 동일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는 없었고 사업비가 유사한 경우도 찾기 어려움
- 그러나 사업명칭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충남문화재단 운영’,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역문화진흥계획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
- 이와 같이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연계성이 명확하기 드러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록된 사업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다음으로,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에 제시된 사업이 중  
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40억원 이  
상인 사업을 선별함

[표 2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소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삽교호 관광지	101,200	200	1,000	52,000	24,000	24,000
덕산온천	31,354	-	-	-	15,677	15,677
원산도 관광단지	502,600		36,000	74,000	180,000	212,600
대한독립 만세길	9,660	2,500	2,300	1,860	-	-
백제문화 이음길	13,900	-	3,475	3,475	3,475	3,475
백제역사 너울옛길	14,130	-	3,532	3,532	3,532	3,534
매운고추 체험나라	10,070	1,000	2,200	2,200	2,200	2,470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55,200	11,040	11,040	11,040	11,040	11,040
근대역사 문화촌	20,520	-	5,129	5,129	5,131	5,131
뿌리깊은 인삼체험 마을	4,510	-	1,503	1,503	1,504	-
여민동락 역사누리	19,493	6,940	3,000	5,420	1,843	2,290
홍주천년 양반마을	9,920	-	1,984	1,984	1,984	1,984
온천수 체험센터	18,000	-	2,000	5,000	5,000	6,000
삼길산 전망타워	5,000	-	500	2,500	2,000	-
죽도 출렁다리 및 조망쉼터	15,000	-	500	7,000	7,500	-
예당호 수변 관광 활성화	4,720	-	1,573	1,573	1,574	-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 활성화	4,400	600	1,390	2,410	-	-
국립생태원 연계거점 관광지	7,946	5,360	2,316	-	-	-
태안해상관광 테마특구	48,000	300	12,000	12,000	12,000	11,700
향적산 치유의 숲	3,500	300	1,600	1,600	-	-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14,900	-	2,160	4,246	4,247	4,247
관광홍보 및 마케팅계획	18,400	-	5,000	5,000	5,000	3,400
요우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12,200	-	3,050	3,050	3,050	3,050
통합 관광안내체계 개발 및 고도화	4,800	-	1,600	1,600	1,600	-

- 이상의 사업들이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에 제시된 관광  
부문 사업과 동일한지, 상위사업으로 연계되었는지 등을 살펴봄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은 관광 부문에서 16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표 2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관광 부문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9년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12,165	2,291
문화관광축제 지원	5,097	960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5,081	957
백제문화제 지원	5,309	1,000
관광지 개발	16,454	3,100
문화관광자원 개발	8,577	3,092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3,900	5,516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4,060	2,560
백제역사 너울옛길(부여)	5,815	2,000
매운고추체험나라(청양)	4,485	1,750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2,100	4,113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17,835	5,945
관광지 개발(안면도)	12,300	5,000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0,000	10,00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1,161	11,61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1,036	4,860

- 검토 결과, 이러한 사업들 중 일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반면, 일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중장기 계획이 신규사업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부 사업은 중장기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명칭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제2차 충남체육발전 중장기 계획(2019-2023)’에 제시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을 선별함



[표 25] 제2차 충남체육발전 중장기 계획(2019-2023)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각종 대회개최 및 지원	5,325	1,000	1,030	1,070	1,095	1,130
직장 및 실버스포츠클럽 조성·지원	11,051	2,000	2,100	2,205	2,315	2,431
소외계층 스포츠활동 지원	5,200	1,000	1,020	1,040	1,060	1,080
노후시설 개보수	6,000	1,000	1,100	1,200	1,300	1,400
우수(꿈나무) 선수 육성사업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다비 체육관' 유치·건립	44,000	0	6,000	12,000	14,000	12,000
지역거점형스포츠클럽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에어돔 시범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사업	16,050	50	4,000	4,000	4,000	4,000
경기장 및 자전거 테마파크조성	20,000	5,000	5,000	5,000	5,000	0
기금조성 (20~23년)	8,000	0	1,000	2,000	2,000	3,000

- 이상의 사업들이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에 제시된 체육 부문 사업과 동일한지, 상위사업으로 연계되었는지 등을 살펴봄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은 체육 부문에서 40억원 이상 사업으로 21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표 26]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의 체육 부문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9년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8,660	3,515
시·군청 체육팀 육성	31,717	5,974
체육회 운영	12,479	2,354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54,371	10,241
체육지도자 관리(도)	5,735	1,080
체육지도자 관리(기금, 시군경상)	21,113	4,002
체육지도자관리(자체 시군보조)	1,865	354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	12,141	1,689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	11,580	1,528
스포츠강좌이용권	6,775	850
장애인체육회 운영	4,790	902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자체 민간보조)	10,984	2,069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 보강	5,329	1,004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5,155	971
생활체육공원 조성	5,084	958
지방체육시설지원	68,669	12,972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735	1,082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5,187	999
체육시설 민자사업정부 지급금(BTL)	5,583	1,117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22,990	6,700
국민체육센터 건립	14,00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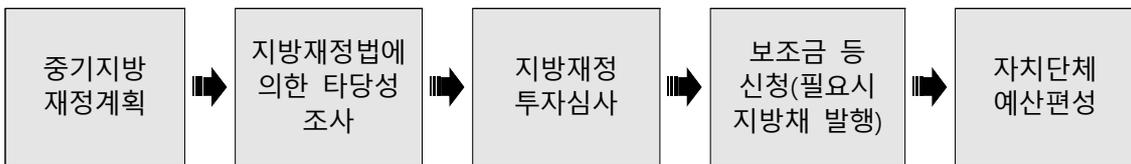
- 두 계획 간 사업명칭의 동일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는 없었고, 사업비가 유사한 경우도 찾기 어려움
- 그러나 사업명칭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충남체육발전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 간 연계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록된 사업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40억원 이상

- 사업이 다수 제시되고 있어 중장기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상의 검토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와의 연계성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임(행정안전부, 2017)
- 충청남도의 투자사업심사의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심사 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함
- 투자심사 절차를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17). p. 1 수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정통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간의 연계성은 전체 투자심사대상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비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 검토 결과, 2019년 이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간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연계 현황

(단위: 건, 억원, %)

연도별	계(A)		심사결과					중기지방반영현황		
	건수	사업비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영건수	반영액(B)	반영률(B/A)
2017년	9	2,850	9	1	8	0	0	9	2,664	93.5
2018년	18	3,667	18	0	18	0	0	17	3,167	86.4
2019년	7	6,152	7	0	7	0	0	4	1,958	31.8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 그러나 2019년에는 7건의 사업 중 4건만 반영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액과 투자심사시 사업비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두 제도 간 연계성이 낮게 나타남

###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것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준 및 기초자료가 됨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가 최종세출예산서에 반영된 비율을 통해 살펴봄
  -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간 분야별 사업비 배분액 비교를 통해 살펴봄
  -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과 예산상 세부사업을 비교하여 살펴봄

#### ■ 정책사업비 반영비율을 통한 연계성 분석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절대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상대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보율성 관련 지표 가운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표를 도입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 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임
  - 이러한 지표는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함

$$\text{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frac{\text{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text{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times 100$$

- 지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는 계획기간 이전에 수립·확정된 계획기간 시작연도의 사업예산총액임. 사업예산총액에는 예비비가 포함됨
- 조사 결과,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은 1017년에 100.4%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113.1%로 다소 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3년 또한 82.4%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유리된 상태를 보임

[표 28]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위: 백만원)

연도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A÷B)×100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소계 (A=a-b)	정책사업비 (a)	천재·재해 (b)	소계 (B=c+d)	정책사업비 (c)	예비비 (d)
2013	82.4%	4,194,176	4,194,178	3	5,090,100	5,020,500	69,600
2014	101.7%	4,679,355	4,680,473	1,118	4,599,400	4,550,600	48,800
2015	113.1%	4,771,690	4,777,652	5,962	4,219,600	4,171,900	47,700
2016	95.7%	5,301,526	5,304,491	2,965	5,541,897	5,250,537	291,360
2017	100.4%	5,073,195	5,089,211	16,016	5,051,512	5,043,893	7,619

주) 사업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비를 합계한 것임  
 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각 연도

-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을 살펴본 결과, 연도마다 차이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자치단체간 표준편차가 5.2%로 상대적으로 작음. 그에 반해, 2013년에는 8.1%로 매우 높음

- 과거에 비해 최근에 그 편차가 줄어들고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러한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함
- 충청남도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2017년에는 매우 적절했지만, 2016년과 2015년에는 적절하지 못했음
- 이러한 값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105.1%	101.9%	103.9%	112.0%	109.5%
부산	102.3%	96.9%	108.0%	105.6%	106.2%
대구	101.5%	106.6%	108.3%	105.0%	108.0%
인천	99.5%	111.8%	111.2%	109.8%	109.8%
광주	103.8%	101.2%	101.6%	102.1%	103.0%
대전	94.8%	102.2%	105.7%	107.5%	101.0%
울산	99.6%	104.8%	103.7%	109.2%	101.0%
세종	111.4%	89.2%	101.0%	96.6%	110.4%
경기	89.2%	98.0%	109.1%	111.5%	109.6%
강원	104.1%	115.1%	98.1%	113.0%	103.6%
충북	100.4%	104.4%	106.5%	106.4%	104.2%
충남	82.4%	101.7%	113.1%	95.7%	100.4%
전북	98.3%	97.6%	109.1%	103.2%	106.8%
전남	94.4%	93.2%	86.7%	94.3%	95.5%
경북	89.4%	100.1%	112.3%	106.0%	99.3%
경남	100.8%	98.6%	112.6%	104.9%	92.6%
제주	115.7%	109.4%	102.3%	101.6%	106.4%
평균	99.6%	101.9%	105.5%	105.0%	104.0%
표준편차	8.1%	6.5%	6.6%	5.6%	5.2%

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각 연도

### ■ 세출 분야별 예산액 비교를 통한 연계성 분석

- 세부적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능별 세출 분야에서 양자 간의 차이를 조사함
  - 이를 위해 2018년과 2019년을 분야별 지출규모를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과의 차이를 살펴봄
- 조사 결과, 2018년과 2019년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은 본예산보다 크게 나타남



- 2018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과 본예산 간 -3,304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4,134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결과는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0]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2019년 예산 간 차이(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중기계획(A)	본예산(B)	편차(B-A)	중기계획(C)	본예산(D)	편차(C-D)
합 계	5,503,921	5,173,500	-330,421	6,153,393	5,740,000	-413,393
일반공공행정	585,352	599,716	14,364	717,833	616,613	-101,220
공공질서및안전	127,230	118,923	-8,307	134,088	136,156	2,068
교육	321,201	333,193	11,992	345,417	366,597	21,180
문화및관광	254,512	224,669	-29,843	295,050	224,008	-71,042
환경보호	358,378	339,076	-19,302	400,869	385,839	-15,030
사회복지	1,588,068	1,617,896	29,828	1,743,786	1,880,307	136,521
보건	127,787	125,935	-1,852	141,318	132,922	-8,396
농림해양수산	979,484	900,908	-78,576	1,094,221	918,583	-175,638
산업·중소기업	149,556	90,631	-58,925	179,098	128,882	-50,216
수송및교통	281,239	154,533	-126,706	282,084	164,245	-117,839
국토및지역개발	258,430	233,743	-24,687	325,857	271,680	-54,177
과학기술	51,303	17,805	-33,498	6,851	3,214	-3,637
예비비	55,950	53,349	-2,601	64,563	77,769	13,206
기타	365,431	363,122	-2,309	422,358	433,185	10,827

○ 본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임

- 이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매해 단기적인 투자사업이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 때문임(김현아, 2001: 허명순 외, 2003: 60 재인용)
-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매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가용재원을 본예산

에 모두 편성하지 않고 남겨두기 때문임

- 충청남도는 추가경정예산을 1회계연도 내에 보통 2회 정도 실시함

### ■ 세부사업 비교를 통한 연계성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사업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하기 위해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과 2018년 예산서의 세부사업을 을 비교함
- 세부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및관광 분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세부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과 행사성사업은 3억원 이상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됨. 그에 따라, 예산서상의 세부사업 항목과 차이가 발생함
- 아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비교를 실시함
  - 2018~2022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82개로 나타남
  - 우선 본예산과 비교한 결과, 동일하게 반영된 경우는 33건이고, 예산이 증가한 경우는 16건, 예산이 감소한 경우는 25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남
  -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산서에 사업명 표기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사업을 쪼개서 표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최종예산과 비교한 결과, 동일하게 반영된 경우는 29건이고, 예산이 증가한 경우는 17건, 예산이 감소한 경우는 28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남

[표 3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 예산서 간 세부사업 비교(문화및관광 분야)

(단위: 백만원)

번호	세부사업명	중기지방재정계획 (A)	본예산 (B)	편차1 (B-A)
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000	2,325	-675
2	지역문화사업 운영	358	656	298
3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시군경상)	3,441	3,406	-35
4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3,465	1,600	-1,865



번호	세부사업명	중기지방재정계획 (A)	본예산 (B)	편차1 (B-A)
5	충남문화재단 운영	3,000	2,417	-583
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742	1,824	82
7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1,120	1,008	-112
8	공립예술단 운영	6,907	7,090	183
9	지역예술 진흥	1,197	1,540	343
10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40	40	0
11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2,600	1,911	-689
12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300	1,300	0
13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시군경상)	870	870	0
14	공예문화산업육성	160	78	-82
15	대표도서관 건립	4,500	-	확인불가
16	충남도서관 개관 준비		1,268	1,268
17	충남도서관 운영	7,000	3,349	-3,651
18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008	8,008	0
1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00	600	0
20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784	1,784	0
21	생활문화센터 조성	671	671	0
22	문화시설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886	1,886	0
23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669	988	319
24	대표도서관 운영	6,539	-	확인불가
25	문화시설 잔여부지 매입	5,400	-	확인불가
26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시군경상)	105	-	확인불가
27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556	556	0
28	전통사찰 보수정비(시군자본)	1,800	1,710	-90
29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3,903	32,675	8,772
30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630	630	0
31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257	2,257	0
32	문화재 돌봄사업	2,000	2,000	0
33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500	3,130	630
34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자체)	30	30	0
35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시군경상)	821	-	확인불가
3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00	4,258	-742
37	문화재 야행 사업	1,224	900	-324
38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200	150	-50
39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763	825	62
4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057	873	-184
41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자본)	20,036	20,036	0

번호	세부사업명	중기지방재정계획 (A)	본예산 (B)	편차1 (B-A)
4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시군경상)	276	276	0
43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2,291	786	-1,505
44	문화관광축제 지원	960	960	0
45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957	622	-335
46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도)	1,000	1,000	0
47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시군경상)	650	650	0
48	백제문화제 지원	3,000	1,780	-1,220
49	관광지 개발	2,700	2,700	0
50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3,278	3,278	0
51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보령)	3,250	3,250	0
52	문화관광자원 개발	9,494	9,494	0
53	대한독립만세길조성(천안)	700	1,000	300
54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700	700	0
55	백제역사 너울옛길(부여)	1,000	1,000	0
56	매운고추체험나라(청양)	500	500	0
57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1,300	2,000	700
58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2,000	-	확인불가
59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2,000	6,840	-5,160
6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9,391	9,494	103
61	도청 체육팀 육성	3,412	2,912	-500
62	시·군청 체육팀 육성	5,800	5,750	-50
63	체육지도자 관리	50	30	-20
64	체육회 운영	2,288	2,122	-166
65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9,943	9,444	-499
66	체육지도자 관리(도)	1,049	1,049	0
67	체육지도자 관리(기금,시군경상)	3,885	3,885	0
68	장애인체육회 운영	876	850	-26
69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자체 민간보조)	2,009	1,696	-313
70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도)	275	275	0
71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기금,민경보)	133	133	0
7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자체,보조)	47	47	0
73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975	1,075	100
74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943	1,662	719
75	생활체육공원조성	930	930	0
76	지방체육시설지원	12,594	12,244	-350
77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1,050	1,400	350
78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979	-	확인불가
79	체육시설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117	1,117	0



번호	세부사업명	중기지방재정계획 (A)	본예산 (B)	편차1 (B-A)
80	충남스포츠센터건립	1,700	1,700	0
81	생활체육 활성화	45	206	161
82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2,515	-	확인불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사이의 연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첫 번째 연도와 예산서의 회계연도가 동일함에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비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낮은 연계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예산편성 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안은 실국별 편성, 예산부서의 조정, 의회의 심의, 추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수행 여부와 사업비가 변경됨
  - 그에 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국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부서가 취합·조정 한 이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구조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4. 세수입 예측의 적절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세수입 전망을 근거로 향후 투자재원을 가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수입 예측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수입 예측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 첫째,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예측경향을 살펴봄

- 둘째,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항목별 전망치와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비교하여 예측의 적절성을 검토함
- 셋째,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와 2017년, 2018년 지방세수입을 비교하여 예측의 적절성을 검토함
- 우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봄
  - 이를 위해 2015~2019년 계획부터 2019~2023년 계획까지 5개 계획을 비교함
  - 5개 계획에서 모두 중복되는 2019년의 재정전망치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계획은 7조 7,061억원인 반면 2015~2019년 계획에는 6조 1,314억원으로 약 1조 6천억원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연차별 증가 경향은 2018년, 2020년 등 모든 연도에서 나타나고 있음



[표 32] 충청남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5-2019년	55,688	57,436	58,737	59,851	61,314				
2016-2020년		66,700	67,814	65,979	67,958	69,173			
2017-2021년			65,546	67,439	67,396	69,573	69,650		
2018-2022년				70,386	72,221	73,350	74,922	76,944	
2019-2023년					77,061	79,812	84,093	87,596	91,536

-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축소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축소 경향은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둘째,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항목별 전망치와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비교함
  - 우선, 2017년 일반회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결산액의 규모가 전망치보다 크게 나타남
  - 총액 규모에서는 결산액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세부 수입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남
  - 연도별 계획마다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방교부세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33] 충청남도 2017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결산(예산액) (A)	2017-2021년		2016-2020년		2015년-2019년	
		2017년 전망치(B)	편차 (A-B)	2017년 전망치(C)	편차 (A-C)	2017년 전망치(D)	편차 (A-D)
합 계	5,243,250	5,047,561	195,689	5,144,622	98,628	4,819,000	424,250
지방세 수입	1,680,400	1,727,325	-46,925	1,703,247	-22,847	1,280,100	400,300
세외수입	95,927	81,019	14,908	184,003	-88,076	98,000	-2,073
경상적 세외수입	23,066	23,827	-761	23,680	-614	26,500	-3,434
임시적 세외수입	72,861	57,192	15,669	160,323	-87,462	71,500	1,361
지방교부세	668,806	597,344	71,462	524,300	144,506	625,900	42,906
보조금	2,615,167	2,568,357	46,810	2,642,700	-27,533	2,693,900	-78,73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82,950	73,518	109,432	90,372	92,578	121,100	61,850

- 다음으로, 2018년 일반회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결산액의 규모가 전망치보다 크게 나타남
- 결산액과 전망치 간 차이는 과거 계획에서 더 크게 나타나 예측기간이 길어 질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짐을 보여줌
- 총액 규모에서는 결산액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세부 수입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남
- 그 차이는 연도별 계획마다 차이가 나타남. 특히, 보조금은 연도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그에 반해, 지방교부세의 전망치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나타냄.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추계의 정확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표 34] 충청남도 2018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예산액) (A)	2018-2022년		2017-2021년		2016-2020년		2015-2019년	
		2018년 전망치 (B)	편차 (A-B)	2018년 전망치 (C)	편차 (A-C)	2018년 전망치 (D)	편차 (A-D)	2018년 전망치 (E)	편차 (A-E)
합 계	5,541,023	5,503,921	37,102	5,270,548	270,475	5,184,843	356,180	4,992,000	549,023
지방세수입	1,786,670	1,801,689	-15,019	1,784,169	2,501	1,761,871	24,799	1,325,400	461,270
세외수입	85,145	90,885	-5,740	82,431	2,714	91,568	-6,423	99,000	-13,855
경상적 세외수입	22,557	20,680	1,877	24,228	-1,671	23,886	-1,329	27,200	-4,643
임시적 세외수입	62,588	70,205	-7,617	58,203	4,385	67,682	-5,094	71,800	-9,212
지방교부세	770,981	640,685	130,296	630,037	140,944	537,200	233,781	657,200	113,781
보조금	2,732,098	2,806,308	-74,210	2,700,184	31,914	2,705,833	26,265	2,783,400	-51,30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66,129	164,354	1,775	73,728	92,401	88,371	77,758	127,000	39,129

- 셋째,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전망치와 2017년, 2018년 지방세수입을 비교하여 예측의 적절성을 검토함
  - 우선, 2017년 지방세수입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연도마다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 않음
  - 2017-2021년 계획과 2016년-2020년 계획의 전망치는 결산액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2015-2019년 계획의 전망치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세목에서는 취득세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이는 취득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35] 충청남도 2017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결산 (예산액) (A)	2017-2021년		2016-2020년		2015년-2019년	
		2017년 예측치 (B)	편차 (A-B)	2017년 예측치 (C)	편차 (A-C)	2017년 예측치 (D)	편차 (A-D)
지방세 합계	1,680,400	1,727,325	-46,925	1,703,247	-22,847	1,280,100	400,300
보통세	1,332,200	1,373,866	-41,666	1,354,628	-22,428	990,900	341,300
취득세	914,100	958,306	-44,206	923,873	-9,773	611,800	302,300
등록면허세	63,700	66,860	-3,160	66,579	-2,879	61,400	2,300
레저세	18,100	18,978	-878	21,535	-3,435	18,600	-500
지방소비세	336,300	329,723	6,577	342,641	-6,341	299,100	37,200
목적세	340,200	347,458	-7,258	342,199	-1,999	282,900	57,300
지역자원 시설세	93,600	95,028	-1,428	94,546	-946	63,300	30,300
지방교육세	246,600	252,430	-5,830	247,653	-1,053	219,600	27,000
지난년도수입	8,000	6000	2,000	6,420	1,580	6,300	1,700

- 다음으로, 2018년 지방세수입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2017년 비교 결과와 달리 전체적으로 예측치의 규모가 결산액보다 크게 나타남
- 그리고 결산액과 예측치 간 차이는 과거 계획에서 더 크게 나타나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짐을 보여줌
- 총액 규모에서는 예측치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세입 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남
- 2018-2022년 예측치와 결산액 간 편차를 보면 취득세에서만 예측치가 더 큰 반면, 나머지 세목에서는 결산액이 더 크게 나타남. 취득세의 편차가 전체 지방세의 편차를 결정함
- 이는 세입액이 큰 세목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세수입 예측에서 중요함을 시사함



[표 36] 충청남도 2018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수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예산액) (A)	2018-2022년		2017-2021년		2016-2020년		2015-2019년	
		2018년 예측치 (B)	편차 (A-B)	2018년 예측치 (C)	편차 (A-C)	2018년 예측치 (D)	편차 (A-D)	2018년 예측치 (E)	편차 (A-E)
지방세 합계	1,786,670	1,801,689	-15,019	1,784,169	2,501	1,761,871	24,799	1,325,400	461,270
보통세	1,420,017	1,441,395	-21,378	1,411,738	8,279	1,401,547	18,470	1,026,300	393,717
취득세	995,908	1,029,032	-33,124	974,539	21,369	952,726	43,182	630,000	365,908
등록면허세	69,409	65,963	3,446	70,817	-1,408	68,476	933	63,200	6,209
레저세	17,500	17,500	0	19,888	-2,388	22,002	-4,502	19,100	-1,600
지방소비세	337,200	328,900	8,300	346,494	-9,294	358,343	-21,143	314,000	23,200
목적세	360,699	354,294	6,405	366,431	-5,732	353,904	6,795	292,800	67,899
지역자원 시설세	96,248	96,248	0	101,347	-5,099	98,811	-2,563	66,600	29,648
지방교육세	264,451	258,046	6,405	265,084	-633	255,093	9,358	226,200	38,251
지난년도 수입	5,954	6,000	-46	6,000	-46	6,420	-466	6,300	-346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과 실제 결산액 사이에는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편차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세입항목별 예측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예측이 지방세 수입 예측의 정확성을 결정함
- 세입예측은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입예측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반의 오차를 확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방법 및 추계절차를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 평가 및 환류 체계

-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그 만큼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실국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 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 전체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재정운용에 준거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형식적 작성자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인식정도와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계획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 및 개선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재 실국에서 편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문제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의 투자방향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함
  - 현재 분야별 정책방향, 주요투자사업, 세부사업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제5절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제도 도입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계획이므로, 분야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은 중요한 요소임
-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에 ‘중장기 계획’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의 선출과정에서 마련된 사업은 ‘시책사업’ 또는 ‘공약사업’ 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e-호조 시스템상 구분표기 기능이 부재함
  - 현재의 중기재정작성 체계에서 이러한 표기를 하려면, 예산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상에서 실국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취합한 후 다시 실국에 자료를 송부하여 표기를 요청하는 이중 과정이 필요함
  - 그 과정에서 실국 담당자는 업무부담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화 이전에 실국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제도 도입

####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편성 의무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보다 강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예산안에 세부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의 사업범위 확대

-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담고 있고 4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e-호조 시스템상 관리하고 있어 세부사업별 계획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사업의 계획서를 중기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통해 계획된 세부사업들이 매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된 사업비가 투입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그러나 단기간에 이러한 큰 변화는 실행과정에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세부사업계획서에 기재되는 사업규모를 2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 검증 제도 도입

- 앞의 분석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간의 차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이 적절하게 추정되어 계획이 작성될수록 계획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분배가 가능함



-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액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별 예산액은 현재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부기사업 수준으로 수정해야 함
- 사업비책정의 적절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이 활용되어야 함
- 충청남도에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검증기관으로 적절할 수 있음

#### **4. 세입추계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추계는 향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초자료가 됨
- 세입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세입추계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이 필요함
- 우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세입추계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부서가 추계한 세입전망이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전문기관과의 검토를 통해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또다른 추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제도 도입**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은 수립구조의 차이로 인해 예산서상 예산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단위 예산은

성격이 다른 점도 양자 간 불일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동시에 제출됨. 그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없게 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확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1회 추경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편차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실국의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총괄팀에서 예산심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편, 의회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인 10월 말 정도에 선제적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6.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정착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고, 분야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준거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계획수립 및 운영에 활용하여야 함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발전해가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 7. 실국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공무원 컨설팅 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작성하는 실국별 공무원의 인식과 업무지식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 실국별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실국별 담당공무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수준이 높아져야 함
  - 현재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e-호조시스템 이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실국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과별로 전산교육장에서 e-호조 사업예산구조화 및 세부사업(연도별 투자계획) 입력에 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8.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인력 확보

- 이상의 개선방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함. 즉 개선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는 재정지원팀의 1인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업무를 여러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음
-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상의 개선방안들을 적용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 적절할 것임

## 제4장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시 원가산정<sup>3)</sup>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보조금 제도

---

제3절 민간지원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

제4절 충청남도 보조금 원가산정 기준

---

제5절 원가산정기준 적용 제도화 방안

---

3) 제4장은 충남도의회 2020년 의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심의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최두선 외) 보고서를 발췌·정리한 내용임



## 제1절 문제 제기

### ■ 연구의 배경

- 충청남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 되고 있으나 보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사업물량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어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별, 시기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보조금의 속성상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조금 예산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부실 보조사업의 요인이 되거나 또는 예산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 연구의 목적

- 따라서 주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실태를 분석하고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 기준 또는 단가산출 요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민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 예정임
- 또한 동일 및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규모에 차이가 나거나 사업간 또는 지역간 지원 규모 편차가 발생하는것을 예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나 관련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제2절 보조금 제도

### 1. 보조금 개요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음

####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것을 말하며,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목적
  -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집행됨

[표 37] 국고보조금의 목적

구분	내용	비고
1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2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심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3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4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현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5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인 지원)	
6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	
7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 38]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번호	법령 및 규정명	법체계	주요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li> <li>◦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li> </ul>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li> </ul>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li> <li>◦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li> </ul>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li> <li>◦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인정기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li> </ul>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li> <li>◦ 검증기관의 의무 및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및 기한,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등</li> </ul>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감사인 자격, 선임, 해임, 지정, 회계감사기준, 감사조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li> </ul>
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li>◦ 정보공시 적용범위, 공시사항, 기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제재조치 등</li> </ul>
8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기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li> <li>◦ 적격성심사의 대상 및 면제사업, 절차, 분석방법, 결과의 활용</li> </ul>
9	보조사업 평가지침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li> </ul>
10	국고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현장에서 담당공무원·보조사업자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li> <li>◦ 보조금법 등 관련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li> <li>◦ 보조사업의 개요, 주체,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li> </ul>



## 2)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표 39] 용어의 구분

구분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	보상금
개념	지자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 처리에 지급되는 경비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공공기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지급되는 경비	지자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비	지자체의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거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등	지방재정법 제18조, 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51조	각 개별 법령
정산	사후정산	정산 불필요	사후 정산	정산 불필요

### ○ 지방보조금의 분류

- 보조금은 교부대상에 따라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내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 보조로 구분됨

[표 40] 지방보조금의 분류

구분	단위사업명
대상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li> <li>◦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li> </ul>
내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li> <li>◦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li> </ul>

○ 지방보조금의 종류

[표 41] 지방보조금의 종류(13개 통계목)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보조 (5)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민간보조 (8)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표18] 지방보조금의 종류 중 본 연구의 대상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지원

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동예산 비목에 편성할 수 없음

③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 ※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sup>4)</sup>
  - 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 ※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법 제23조제3항)

○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4)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신고포상금제, 보조금 관련 사항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7, 제68조)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운용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 개요,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운용평가 등
- 그 외의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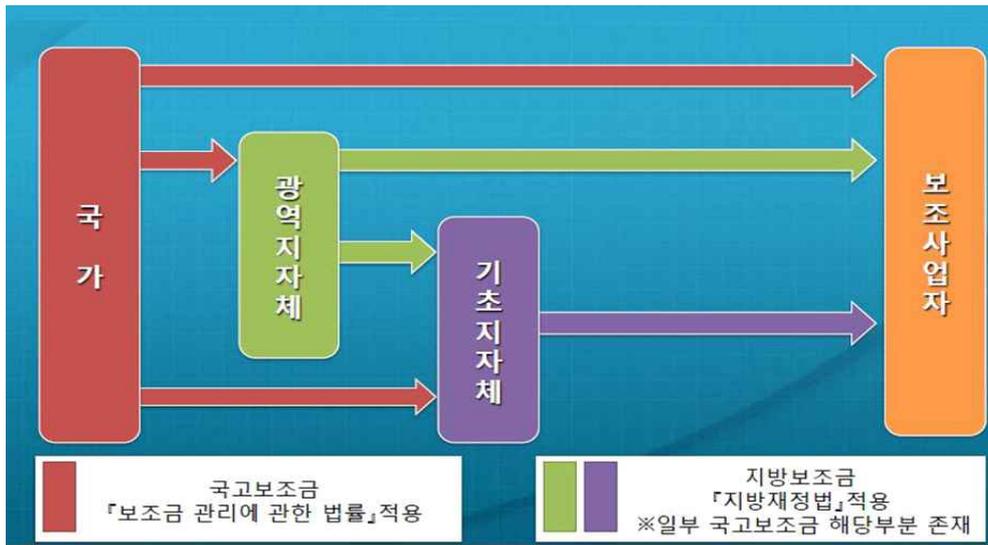
[표 42]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법령 등 명칭	주요내용	관련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	제7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별표1' 과 같이 함	제4조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조항임/ 122개 규정	제4조 관련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안전부)	◦ 법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제33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용관리에 관한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도와	제2조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기준부담율)은 별표로 정함, 단,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함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보조사업영 및 부담비율 명시 111개	제2조 관련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남도)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필요 사항 규정	제1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충청남도)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평가, 재산관리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 절차 및 시식 등)을 규정	매년 책자화

○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 흐름도

- 보조금의 지원 흐름은 국가가 직접 보조금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과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간단계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도 있음



[그림 14] 보조금 지원 흐름도

## 2.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현황

### 1)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

-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외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2020.01),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8. 3. 30. 시행) 등을 정립하고 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편성, 공모, 선정 및 교부, 집행, 정산, 중요 재산의 관리, 평가, 공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서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지침을 변경하여 시군 및 관련 부서에 통지하고 있음

### 2)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은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과 충청남도가 순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조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과 대비하여 지방보조금은 건수(19.5%)와 금액(28.2%) 모두 증가하였으며, 순도비 보조의 경우 그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 2018-2020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금액(억원)
국고보조	930	29,239	986	32,502	900	34,391
순도비보조	1,209	4,140	1,289	5,019	1,657	8,416
합계	2,139	33,379	2,275	37,521	2,557	42,807

출처 : 충청남도 2018년, 2019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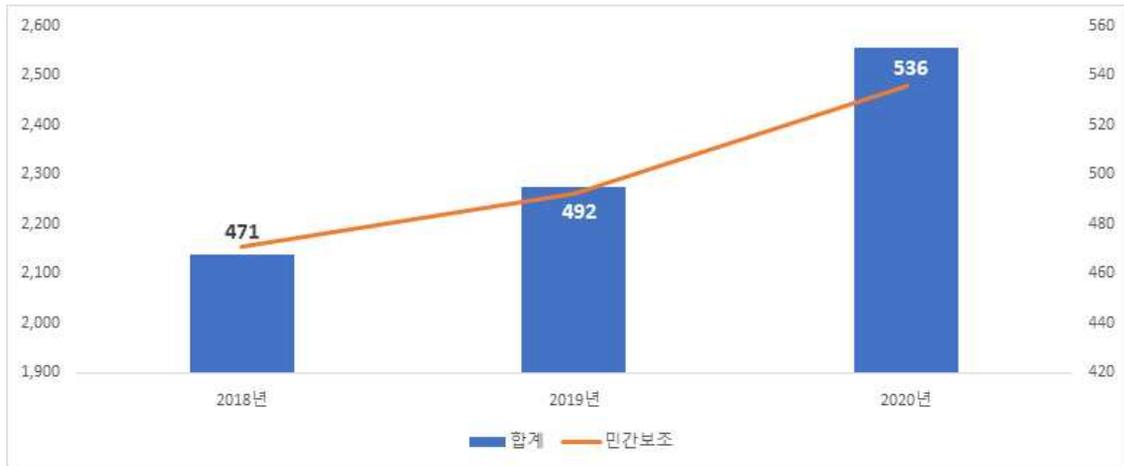
[그림 15] 2018년~2020년 지방보조금 사업 추세 / (좌)합계 (우)순도비보조

-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인 공공단체와 민간으로 구분하면 2018년 대비 공공단체의 경우 건수로 353건, 금액으로는 9,2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의 경우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85억 원이 증가하였음

[표 44] 2018-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금액(억원)
공공단체보조	1,668	32,179	1,783	36,267	2,021	41,422
민간보조	471	1,200	492	1,254	536	1,385
합계	2,139	33,379	2,275	37,521	2,557	42,807

출처 : 충청남도 2018년, 2019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그림 16] 2018년~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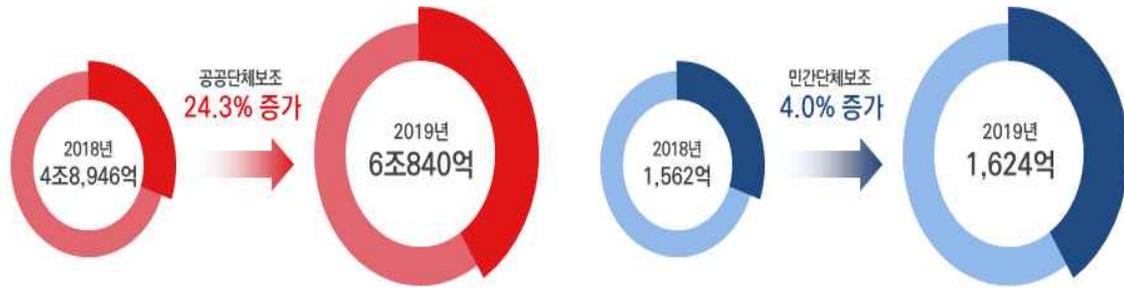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공공단체 보조는 2019년은 전년 대비 합계 23.7% 증가하였고, 국비는 16.9%, 도비는 30.9%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높게 증가함
- 공공단체보조<sup>5)</sup>인 시군보조는 전년 대비 24.3% 증가하고 국비는 17.5%, 도비는 32.3% 증가하여 역시 도비가 국비에 비해 높게 증가함
- 민간보조는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 국비는 0.4%, 도비는 15.9% 증가하여 민간보조 역시 도비가 국비에 비하여 높게 증가함

[표 45] 2018-2019년 지방보조금(공공단체보조) 집행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공공단체보조	소계	48,946	25,772	6,959	13,930	2,285	60,840	30,281	9,204	18,772	2,583	24.3	17.5	32.3	34.8
	자치단체자본보조	28,482	16,419	3,828	7,471	765	35,068	19,337	5,133	9,795	803	23.1	17.8	34.1	31.1
	자치단체경상보조	20,463	9,353	3,131	6,459	1,520	25,773	10,943	4,071	8,977	1,781	25.9	17.0	30.0	39.0

출처 : 충청남도 2018년, 2019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5) 공공단체보조 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규모가 작아서 제외하였음



[그림 17]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보조금(공공단체/민간단체) 변화

[표 46] 2018-2019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집행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계	1,562	863	611	6	82	1,624	867	708	16	33	4.0	0.4	15.9	144.9
민간경상사업보조	550	162	329	4	55	547	144	377	16	11	-0.5	-11.0	14.6	260.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8	0	47	-	1	52	0	51	-	1	8.9	10.8	9.5	-
민간행사사업보조	22	0	18	-	3	24	0	22	-	1	9.9	12.1	20.6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	17	42	-	1	65	19	43	-	2	8.7	12.5	3.9	-
사회복지사업보조	111	25	66	2	19	105	31	73	-	1	-5.7	27.2	11.3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29	8	18	-	2	31	5	13	-	14	9.4	-44.4	-30.1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651	650	0	-	-	707	667	38	-	3	8.7	2.5	13,46(8.1)	-
운수업계보조	91	-	91	-	-	91	-	91	-	-	-	-	-	-

출처 : 충청남도 2018년, 2019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 3)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2020년 기준)

-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정기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과 ‘2020년 수

시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역을 분석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합계 9,193,74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378,517천 원으로 80.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7.70%, 민간법정운영비보조 12.04%로 분석됨

[표 47]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내역(2020년 기준)

구분	총사업비 (천 원)	보조금 (천 원)	지원사업 수 (개)	비고
민간경상사업보조	7,378,517	7,193,054	107	<p>민간경상사업보조 (80.26%) 민간법정운영비보조 (12.04%) 민간행사사업보조 (7.70%)</p>
민간행사사업보조	708,800	562,850	10	
민간법정운영비보조	1,106,424	1,038,755	14	
합계	9,193,741	8,794,659	131	

출처 : 2020년 정기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20년 수시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내용 발췌



○ 2020 각 세부 통계목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8]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리스트

순번	사업명	사업명
1	(주)세스코	•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2	푸드원텍(주)	•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3	한국외식산업연구소(주)	•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4	인형컴엔터테인먼트	•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5	한국외식산업연구소(주)	•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 교실
6	한국외식산업연구소(주)	•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7	충청남도 약사회	• 2020년 건전한 음주 및 금연문화 조성사업
8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	• 백혈병 소아암 환아지원사업
9	나사렛대학교	• 2020년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10	문화유산회복재단	• 2020년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11	(재)문화유산회복재단	• 2020년 국외소개 반출문화재 실태조사
12	서산부석사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 보안위원회	• 2020년 고려불상 관세음보살 제자리 봉안활동
13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 충청남도 태권도시범단 운영
14	(사)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 쌀 산업관련 전문교육 지원
15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충남지회	• 쌀 산업관련 전문교육 지원
16	(사)한국산악회 충남지부	• 산불예방 및 방지활동
17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18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19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20	서산시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1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2	아산시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3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4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5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6	태안군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8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29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30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31	논산시사람꽃복지관	•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32	공주대학교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3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4	계룡시노인복지관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5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6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7	보령노인종합복지관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8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 고령층 정보화교육장 지원
39	(사)지역경제와 고용	•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0	주식회사 다인	•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1	참사랑 가족사랑연구소	•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2	행복있다 사회적협동조합	•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3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 민간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사업
44	홍복읍 주민자치회(열린참여분과)	• 열린 주민자치, 주민들 속으로
45	(사)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20년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46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20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사업
47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0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사업
48	충남하나센터	• 202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49	참사랑가족상담연구소	• 202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50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학교교육
51	사단법인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충남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 사업신청서
52	충청남도공예협동조합	• 2020년 충청남도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53	사단법인 한국생활미술협회	• 2020년 충청남도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54	맑은생 공예사회적협동조합	• 2020년 충청남도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55	협동조합 그려	• 2020년 충청남도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5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20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역사문화투어
57	(사)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원	• 내포지방뿌리찾기, 고대역사현장탐방
58	사단법인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 2020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59	(사)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 2020 농식품 스마트 소비 교육사업
60	사단법인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 2020 식생활 교육사업
61	(사)한국임업후계자회 충남지회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모델학교 등 기술교육 분야
62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충남지회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모델학교 등 기술교육 분야
63	한국산양삼협회 충남지회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모델학교 등 기술교육 분야
64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숲길걷기대회 분야
65	(사)한국임업후계자회 충남지회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전국대회 분야
66	(사)한국임업후계자회 충남지회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해외연수 분야
67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0년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68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0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69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0년 화력발전소 주변가정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70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71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	• 건축 및 도시공산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
72	(주)뉴스서천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3	(주)엘지헬로비전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4	(주)대전방송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5	(주)서산시대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6	(주)영상뉴스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7	이림앤코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8	(주)뉴스서천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79	(주)주간당진시대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0	(주)주간당진시대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1	(주)태안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2	(주)홍주일보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3	(주)청양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4	(주)서산시대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5	(주)논미신문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6	(주)청양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7	(주)무한정보신문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8	(주)서산시대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89	(주)주간당진시대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0	(주)홍주일보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1	(주)홍주일보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2	(주)티브로드중부방송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3	에스비씨(SBC)780서산방송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4	(주)서산시대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5	(주)홍주일보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6	(주)주간당진시대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7	(주)충남신문사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8	(주)태안미래신문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99	(주)엘지헬로비전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100	충남지역신문연합회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101	충남지역언론연합	• 2020년 지역언론지원사업(콘텐츠개발지원)
102	(사)한국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 농촌지도자회 농업농촌변화 선도실천
103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평가
104	한국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활동지원



105	충청남도4-H연합회	• 청년농업인4-H회원역량강화교육
106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충남농진회	• 새농업기술포럼 및 농업발전 워크숍
107	충청남도농촌체험협의회	•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출처 : 2020년 정기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20년 수시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내용 발췌

○ 2020 각 세부 통계목별 중 민간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9] 민간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리스트

순번	사업명	사업명
1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2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3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신청사)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 평화통일활동 지원
5	사단법인 대전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6	대전, 충남재향군인회	• 재향군인회
7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운영지원(충남통일관 운영)
8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 2020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경상운영
9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운영 지원
10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출처 : 2020년 정기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20년 수시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내용 발췌

○ 2020 각 세부 통계목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0]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 리스트

순번	사업명	사업명
1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어린이 주간 행사 추진
2	(사)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 쌀전업농 육성
3	충청노인복지협회	• 충남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및 어르신 대축제
4	충남세종재가노인복지협회	• 충남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및 어르신 대축제
5	충청남도공예협동조합	• 제50회 충청남도 관광기념품공모전 수행기관 공모
6	충청남도공예협동조합	• 제50회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7	충청남도공예협동조합	• 제3회 충청남도 공예품박람회
8	충청남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	• 제13회 충남농업인 정보화대회
9	(사)한국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행사
10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11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단체 행사
12	한국생활개선 충청남도연합회	•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행사
13	충청남도4-H본부	• 4-H 학습단체 행사지원
14	충청남도4-H본부	• 한국4-H본부 교육지원

출처 : 2020년 정기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20년 수시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내용 발췌



## 제3절 민간지원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 1.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문제점

- 현재 민간보조금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시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 비목이나 단가기준이 없어 지원하는 보조사업마다 예산편성 항목, 내역, 예산금액 등이 통일되지 못함. 따라서 동일한 사업 이더라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산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중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총사업비		620,400		
인건비	소계	458,500		74%
	인건비	38,500	(팀장급 수행인력) 3,850 x 10개월 x 1명 = 38,500	458,500
		420,000	(실용급 수행인력) 3,000 x 10개월 x 14명 = 420,000	
	소계	118,380		19%
직접사업비	홍보비	49,500	(충남도 15개 시군 버스 및 택시 캠페인 광고) 3,300 x 15개 = 49,500	42,750
		2,500	(리플렛 제작 및 배포) 0.5 x 5,000부(15개 시군) = 2,500	
		6,000	(홍보물품) 6 x 1,000개 = 6,000	
		1,200	(참여사업장 현판 제작) 80 x 15개 = 1,200	
		500	(캠페인 판넬, 현수막 및 배너 제작) 100 x 5회 = 500	
		550	(웹자보 제작) 55 x 10회 = 550	
		3,000	(SNS 및 홈페이지 활성화) = 3,000	
	심리상담	3,000	(충남도 15개 시군 심리상담 결과보고 인쇄) 10x20부x15개=3,000	30,500
		22,500	(심리상담 검사비) 1,500 x 충남도 15개 시군 = 22,500	
	정신건강 돌봄사업	5,000	(자료집 제작 및 인쇄-프로그램 자료 등) = 5,000	10,700 (활량캠프)
		2,172	(강사 및 원고료-1급, 3시간 기준) 724 x 3명 = 2,172	
		2,000	(술박비) 80 x 25실 = 2,000	
		1,000	(회의장 대관료) 500 x 2회 = 1,000	
		3,000	(식비) 20 x 50명 x 3회 = 3,000	
		300	(다과비) 3 x 50명 x 2회 = 300	
		600	(자료집 제작) 10 x 60부 = 600	
		128	(현수막 및 배너) 64 x 2식 = 128	
		1,000	(프로그램 운영비) 20 x 50명 x 1회 = 1,000	
		4,344	(강사 및 원고료-1급, 3시간 기준) 724 x 3명 x 2회 = 4,344	
		600	(FT수당) 150 x 2명 x 2회 = 600	
1,006		(회의장 대관료) 503 x 2회 = 1,006		
1,200		(식비) 20 x 30명 x 2회 = 1,200		
300	(다과비) 5 x 30명 x 2회 = 300			
450	(인쇄비) 5 x 45부 x 2회 = 450			
100	(현수막) 50 x 2회 = 100			
180	(진행요원) 60 x 1명 x 3회 = 180			
1,200	(프로그램 운영비) 20 x 30명 x 2회 = 1,200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4,000	(회의수당) 100 x 8명 x 5회 = 4,000	5,250 추진단	
	900	(회의비) 18 x 10명 x 5회 = 900		
	150	(다과비) 3 x 10명 x 5회 = 150		
간접사업비	소계	43,520		7%
	여비	7,000	(여비) 700 x 10개월 = 7,000	7,000
	회계감사비	1,500	(회계감사비) 1,500 x 1회 = 1,500	1,500
	일반관리비	31,020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의 5%	31,020
	사업운영비	3,000	(사무용품) 300 * 10개월 = 3,000	3,000
		1,000	(우편 및 문자발송비) 5 x 200회 = 1,000	1,000

[그림 18]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A보조사업자 산출내역서

- 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지만 산출내역서의 양식과 나누는 비목이 상이하여 지원 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지침 항목	비목	세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단위: 원)	비고	
<b>총 사업비</b>		-	<b>624,000,000</b>	-		
인건비 (90%)	소계	-	<b>560,000,000</b>	-		
	인건비	상담사	560,000,000	◦ 상담사급여 2,800,000원X10개월X20명=560,000,000원		
기타 사업비 (8%)	소계	-	<b>53,000,000</b>	-		
	운영비	자문료	3,400,000	◦ 슈퍼비전 200,000원X2회X7개월=2,800,000원 ◦ 사업운영자문료 200,000원X3회=600,000원		
		성과분석비	10,000,000	◦ 사전·사후 척도지 통계 분석비 20,000원X500케이스=10,000,000원		
	홍보비	인쇄비	8,460,000	◦ 척도지,교육만족도 설문지 100원X5장X900장=450,000원 ◦ 강사교육 교재 20,000원X20명=400,000원 ◦ 기타 인쇄비 3,610,000원 ◦ 홍보물 제작비 및 출력 20,000원X200장=4,000,000원		
		홍보비	6,200,000	◦ 기사홍보 200,000원X3회=600,000원 ◦ 광고비 5,000,000 ◦ 강사교육 교재제작비 30,000원X20명=600,000원		
		업무추진비	회의비	3,000,000	◦ 회의비 30,000원X10개월X10명=3,000,000원	
	기타	여비	6,000,000	◦ 출장비 10,000원X2명X2시간X150기업=6,000,000원		
		강사교육 및 워크숍	4,940,000	◦ 교육 강연료 300,000원X5일=1,500,000원 ◦ 강사교육 진행비(식비,간식비) 12,000원X20명X5일=1,200,000원 ◦ 강사 회의 간식비 4,000원X20명X28회=2,240,000원		
	기타 (2%)	소계	-	<b>11,000,000</b>	-	
		집중치료 지원	종합심리 검사지원 외	11,000,000	◦ 고위험군 종합심리검사 300,000원X20명=6,000,000원 ◦ 치료지원 50,000원X5회X20명=5,000,000원	

[그림 19]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보조사업자 B 산출내역서

- 예산산출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단체, 동일사업이라도 적용되는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2.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정수급 행위의 의도성과 행위자(수급자와 행정담당자)에 따라 기망(fraud), 부패(corruption), 수급자 오류(customer error), 행정적 오류(official error) 등의 네 가지로 구분



[그림 20] 부정수급의 유형화

- 우리나라 2014년(' 14.4~6월) 농업, 중소기업 등 비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6조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점검 결과, 95개 사업(101건)의 부적정 수급사례가 적발됨
- 선정단계(14건)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등의 부적정 수급사례가 적발
- 집행단계(73건)에서는 보조사업자 등에 목적 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 대여 등의 부적정 수급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사후관리 단계(14건)에서는 정

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의 부적정 수급 사례가 적발

- 5년간('08.1~'12.1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타당성 검토 미흡, 유사·중복 사업 선정,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보조시설물 무단거래 등 다수의 부정수급이 적발

## 1)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은 보조사업 선정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되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종류를 분석함

[표 51] 보조사업 집행단계의 부정수급 유형 및 개념

유형	개념
사업비 혼용	◦ 보조금을 지방비 및 자체운영비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유형
목적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
내부비리	◦ 보조사업 담당자가 보조사업비를 개인의 목적으로 횡령하는 유형
부동산 허위증빙	◦ 보조금을 통해 구입되는 부동산 및 건물에 관련하여 허위 증빙하는 유형
장비시설 허위증빙	◦ 보조금을 통해 구입되는 장비 및 시설에 관련하여 허위 증빙하는 유형
인건비 편취	◦ 보조사업 수행 중 허위인력,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부정수급 하는 유형
보육료 편취	◦ 어린이집 관련 아동의 보육수당을 편취하는 유형
교육비 편취	◦ 학생,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
허위성과	◦ 보조 사업 중 발생하는 성과(특허 등)에 대해 허위 증빙하는 유형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사업비를 부정수급하는 유형
명의대여	◦ 국고보조금 수급자가 명의 대여를 통해 제 3자가 수령하게 하는 유형
무단인출	◦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
과다보상	◦ 업무 담당자와 결탁하여 국고보조금을 과다 책정하여 보상하는 유형



가족 허위등재	◦ 보조사업 수행 중 가족 및 친인척을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 등을 편취하는 유형
자부담 회피	◦ 집행내역 허위 작성 및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자부담금을 회피하는 유형
자부담 대납	◦ 보조사업 수행 중 업체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대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
중복증빙	◦ 동일 증빙(영수증 등)을 다른 사업의 지출 내역으로 등록하여 부정수급하는 유형
기간 후 사용	◦ 보조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내부동조자	◦ 보조 사업 선정 담당자와 수급자가 결탁하여 부정 수급하는 유형
정산관리 부적정	◦ 보조사업 담당자가 정산 시 허위 증빙이나 미흡한 증빙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유형
허위 장비 사양	◦ 장비사양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
보조금 편취	◦ 학생, 선수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관리자가 편취하는 유형
사업기준 미흡	◦ 사업의 기준이 미흡하여 정산 시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유형
환수 부적정	◦ 환수의 기준이 미흡한 점을 악용하여 보조금 환수를 하지 못하는 유형
평가 부적정	◦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환수 및 추후 선정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유형
사업관리 불철저	◦ 업무 담당자가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정 수급 유형
계약 부적정	◦ 하나의 사업을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수의 계약으로 부정 수급하는 유형

출처 : 보조사업담당공무원대상 국고보조사업업무매뉴얼(2017.11)

[표 52] 보조금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비율

유형		주요 사례	비율(%)
증빙위조	세금계산서	거래가 없거나 거래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만들어 첨부	40.6
	계좌이체증	계좌이체증 없이 이체증 위조	6.5
	인건비 지급서류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위조	11.7
	매입전표	구입하지 않은 물품 매입전표 위조	0.4
관련 없는 증빙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계좌 이체증 첨부 등	11.2
無 증빙		증빙이 전혀 없음	1.1
유사증빙		견적서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증빙 첨부	4.4
중복증빙		다른 보조사업 등의 증빙 재 첨부	8.8
입금 후 돌려 막기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 지급 후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음	15.3

출처 : 보조사업담당공무원대상 국고보조사업업무매뉴얼(2017.11)

## 2) 부정수급 사례

- 위에서 분석된 부정수급 유형 중 가격부풀리기에 대한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53] 보조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유형	사례
가격 부풀리기	○ 대학 교수가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
가격 부풀리기	○ XX관서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 원 편취
가격 부풀리기	○ XX자치단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1억 8천900만원을 더 받음
가족허위등재	○ 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B,C, D를 원장으로 등재하고,D원장은 자신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이들에게 급여 지급
계약부적정	◦ A 협의회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 계약 체결또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견적서를 나눔
과다보상	◦ 지자체 공무원이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축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
교부조건 미관리	◦ XX자치단체는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해 걷는 하수 발생원 이자 부담금 만큼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64억 1천 1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수령
교육비 편취	◦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자로 위장신고하여 약 1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교육비 편취	◦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익 원을 편취
기간후사용	◦ A협회에서는 대회가 끝난 같은해 조직위원장 개인 목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 사무실에 인테리어 및 사무기 설치비 명목으로 4,700,300원지출
내부 동조자	◦ 지역연고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명으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 5천만 원 횡령
내부 동조자	◦ B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차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취득
등록증 변조	◦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미환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화물자동차 344대를 공급 허용
명의대여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 수령
목적 외 사용	◦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
목적 외 사용	◦ ○○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센터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집회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무단임대	◦ A법인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수산물직매장 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장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5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보육료 편취	◦ ○○자치단체 관내 A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시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하여 4,778만원을 부당 수령

보육료 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X자치단체 관내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이던아이가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61일까지 국외 체류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보육료 1,949,000원을 부당하게 수령</li> </ul>
보육료 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O자치단체 소재 A어린이집은 입소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가 맡겨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약6개월간 보육료 1,648,560원 부당 결제</li> </ul>
보조금 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 후 본인이 임의로 개설한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li> </ul>
부동산 허위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 편취</li> </ul>
사업 관리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에서 HP서버 등 연구 장비와 위성영상자료를 구매 장비 목록과 대사하여 확인하지도않는 등 현장점검을 태만히 하고, 과제책임자의 구두설명만 듣고 개발 내용 성과를 제대로확인하지 않고 결과보고 함</li> </ul>
사업 관리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X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묘 100여기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 장묘업자, 사이버유족 및 분묘이전 보상 절차 관련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OO공</li> </ul>
중복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시 재난지역 선포 후 가구당 보상금 지급 시 아빠, 엄마, 아들이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신청 및 3중으로 수급</li> </ul>
중복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어린이집 대표는 동일영수증을 2개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 18,595천원 횡령</li> </ul>
허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 원 횡령</li> </ul>
허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성과실적 발표 시 성과로 등록한 특허가한 건도 없는데도 31건의 다른 과제의 연구 성과를 연구개발 성과인 것처럼 허위 작성 및 제출</li> </ul>
허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li> </ul>
허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수령</li> </ul>
허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 상당 편취</li> </ul>
허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XX자치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364만원을 부당 수령</li> </ul>
허위 장비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 원을 편취</li> </ul>



허위 증빙	◦ XX보조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
허위 증빙	◦ A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 원 편취
허위 증빙	◦ C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허위 증빙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 횡령
허위 증빙	◦ A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자 소방공사를 할 필요와 계획이 없었는데도, 소방견적을 제출 받고 소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증빙을 만들고 업체에비용을 이체하고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않음
허위 증빙	◦ 협약기한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때에는 연구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데도 20일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연구장비 구매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환불

### 3. 시사점 분석

- 현재 민간보조금 사업비 신청(예산편성) 및 교부신청 단계에서 산출기초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그 단가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세부 비목이 동일한 사업인 경우도 단가의 차이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예산심의 진행시 단가 산정의 적정성 심의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개략적인 심의의 경우 과소·과대 여부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
- 편성(교부)단계에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 또는 정산과정에서 위 사례(가격부풀리기, 부당편취)와 같은 부정수급의 요인이 될수있음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비목, 제품의 가격 등을 포함한 단가기준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일부 정부부처(농림부 등)에서는 표준단가를 일부품목에서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여 보조금의 지원·신청부터 사후검증(정산)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 충청남도 민간지원 지방보조금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단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중 민간보조금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산정에 참고할 표준단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제4절 충청남도 보조금 원가산정 기준

### 1. 기준(안)

#### 1) 민간경상사업보조 원가산정 기준표

구분		기준				비고
비목						
인건비 (A)	1. 컨설팅/ 자문료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20. 1.) 참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로 지급 가능
		구분	내용	지급기준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 시간당 100,000원		
			◦ E-mail , 서면 자문	◦ 회 당 100,000원		
	2. 전문가 심층연구비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1. 학술용역인건비 기준 단가표				전문가 연구비 는 용역수행비가 아니며 단순 자문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 하는 인건비기준
		구분	일 지급기준	월 지급기준	비고	
		책임연구원	◦ 293,612원	◦ 6,459,460원	* 참여율 100% 기준 * 일 지급기준 = 월 지급기준 / 22일 *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 미반영	
		연구원	◦ 225,138원	◦ 4,953,028원		
		연구보조원	◦ 150,497원	◦ 3,310,932원		
		보조원	◦ 112,877원	◦ 2,483,284원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 분		기 준			비 고
비 목					
인 건 비 (A)	3.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별 금액 적용			적용기준에서 ±15% 증감 조정 가능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로 지급 가능
		구분	단위	지급액	
		진행자	회	◦ 500,000원	
		촬영감독	회	◦ 200,000원 ~ 500,000원	
		조명감독	회	◦ 200,000원 ~ 500,000원	
		오디오감독	회	◦ 200,000원 ~ 500,000원	
		연출	작품	◦ 2,000,000원	
		작가	작품	◦ 5,000,000원 이하	
		배우	작품	◦ A급 : 2,000,000원 B급 : 1,000,000원 C급 : 500,000원 * A급(주연배우급) B급(배우경력10년이상) C급(그 외)	
		성우	작품	◦ 500,000원	
그 외	회	◦ 200,000원 이하			

구분		기준		비고		
비목						
인건비 (A)	4. 강사료	(기준) 「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 3. 17) 참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로 지급 가능  1인당 1일 1회 에 한하여 최대 3시간 편성 가능	
		1. 강사료 기준 단가표(시간급)				
		구분		지급액		
		특별강사	특1급	◦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시 매시간 30만원) *현직의 경우 최초 4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지급		
			특2급	◦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시 매시간 30만원) *현직의 경우 최초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지급		
		일반강사	1급	◦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		
			2급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8만원)		
			3급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시 매시간 6만원)		
			4급	◦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시 매시간 3만원)		
		퍼실리테이터(FT)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		
※ 등급별 해당인원 및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1] 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참고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분 비목		기준				비고
인건비 (A)	5. 단순 인건비	(기준) 최저임금 이상 「2020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한도로 적용  2020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9-1051호)				
		구분	시급	일급(8시간기준)	월 환산금액	
		생활임금	10,050 (원/시간)	80,400 (원/일)	2,100,450 (원/월)	
		※ 상여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참고				
경비 (B)	1. 식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2020. 1.) 적용				간담회비와 일반식비 중복반영은 불가 간담회비는 일반식비와 중복계상 불가 간담회 화수는 전체식사의 25%범위 내
		구분	기준	지급액		
		일반식비	1인 1식	8,000 (원)		
		간담회 식비	간담회 시, 1인 1식	20,000 (원)		
	2. 다과비	(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0. 2.)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3. 식비 및 간담회비 적용  1. 간담회비(다과비)				
		구분	기준	지급액		
		내용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 (원/인)		

구분 비목	기준	비고																			
경비 (B)	<p>(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2020. 4. 1.)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p> <p>1.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지역별 상한액 有)</li> <li>- 서울특별시 70,000원</li> <li>- 광역시 60,000원</li> <li>- 그 밖의 지역 50,000원</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지역별 상한액 有)</li> <li>- 서울특별시 70,000원</li> <li>- 광역시 60,000원</li> <li>- 그 밖의 지역 50,000원</li> </ul>																
	구분	지급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지역별 상한액 有)</li> <li>- 서울특별시 70,000원</li> <li>- 광역시 60,000원</li> <li>- 그 밖의 지역 50,000원</li> </ul>																				
<p>(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20. 1.) 적용</p> <p>1. 국내여비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운임</th> <th style="width: 15%;">선박운임</th> <th style="width: 15%;">항공운임</th> <th style="width: 10%;">자동차 운임</th> <th style="width: 10%;">일비 (1일당)</th> <th style="width: 10%;">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내용</td> <td>◦ 실비 (일 반 실)</td> <td>◦ 실비 (2등급)</td> <td>◦ 실비</td> <td>◦ 실비</td> <td>◦ 20,000</td> <td>◦ 20,000</td> </tr> </tbody> </table> <p>2. 국외여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국외 항공운임</td> <td>◦ 2등석 정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국외 여비</td> <td>◦ [참고3]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내용	◦ 실비 (일 반 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20,000	구분	지급액	국외 항공운임	◦ 2등석 정액	국외 여비	◦ [참고3]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내용	◦ 실비 (일 반 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20,000															
구분	지급액																				
국외 항공운임	◦ 2등석 정액																				
국외 여비	◦ [참고3]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분 비목		기준			비고
경비 (B)	5. 도서 인쇄비	(기준) 종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적용 적용단가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금액에 기준년도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분과 부가세 등 합산 (※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참고3] 2005 인쇄요금(종전 조달청기준)의 내용 참고)			
	6. 현장 학습비	(기준) 현장학습비를 제외한 비용 합산 대비 아래 요율 적용			
			구분	적용비율	
			현장학습비	◦ 20% 이내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적용기준에서 여건을 감안 15% 증감 조정 가능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행안부 예정가격작성요령 참조)		
8. 현수막	(기준) 제작되는 현수막 형태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적용			적용기준에서 행사여건을감안 15% 증감 조정 가능	
		구분	현판 제작 (1식)		현수막 제작(1개)
			A급	B급	C급
		금액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하 ◦ 50,000(원/개) 이내 적용
		※ A급: 3천명이상 B급: 2천명 이상 C급: 2천명 미만 행사			

구분 비목	기준			비고	
경비 (B)	9. 회의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20. 1.) 참고			여비는 인건비 항목의 방식을 준용함
		구분	기준	지급액	
		기본료	◦ 2시간 이내	100,000 (원/인)	
		초과료	◦ 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과 관계없이	50,000 (원/인)	
10.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참고				
	구분	지급액			
	기존과 동일 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장소	◦ 견적가격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11. 장비 및 차량 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참고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12. 시상금	(기준)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시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반영함 (경진대회 등)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시상금 총액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 A등급: 3천명이상 B등급: 2천명 이상 C등급: 2천명 미만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 분		기 준	비 고						
비 목									
경 비 (B)	13. 보험료	<p>(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 행사</td> <td>◦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규 행사</td> <td>◦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								
14. 소모품비	<p>(기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 비율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적용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td> <td>◦ 3%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 3% 이내				
구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 3% 이내								

## 2) 민간행사사업보조 원가산정 기준표

구분		기준				비고							
비목													
인건비 (A)	1. 행사 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500,000 (원/회)</td> <td>300,000 (원/회)</td> </tr> </tbody> </table> ※ A등급 : 1천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 B등급은 1천명 미만 참여하는 행사 ※ 연출 제작비용은 민간경상보조금의 단가와 동일 하게 적용함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 (원/회)	300,000 (원/회)	적용기준에서 행사여건에 따라 15% 증감 조정 가능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 (원/회)	300,000 (원/회)											
2. 단순 인건비	(기준) 최저임금 이상 「2020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이내에서 적용  2020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9-1051호)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시급</th> <th>일급(8시간기준)</th> <th>월 환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생활임금</td> <td>10,050 (원/시간)</td> <td>80,400 (원/일)</td> <td>2,100,450 (원/월)</td> </tr> </tbody> </table> ※ 상여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참고 ※ 산출액에 최근연도 임금상승율(%)을 곱하여 합산 (다음연도 임금상승율 반영)				구분	시급	일급(8시간기준)	월 환산금액	생활임금	10,050 (원/시간)	80,400 (원/일)	2,100,450 (원/월)	
구분	시급	일급(8시간기준)	월 환산금액										
생활임금	10,050 (원/시간)	80,400 (원/일)	2,100,450 (원/월)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분 비목		기준		비고									
인건비 (A)	3. 공연팀	<b>(기준)</b>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기준</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연자</td> <td>1급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연자</td> <td>◦ 100만 원 이하 (행사당)</td> </tr> <tr> <td>2급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td> <td>◦ 50만 원 이하 (행사당)</td> </tr> </tbody> </table>		항목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연자	◦ 100만 원 이하 (행사당)	2급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 50만 원 이하 (행사당)	적용기준에서 10% 증감 조정 가능	
	항목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연자	◦ 100만 원 이하 (행사당)											
	2급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 50만 원 이하 (행사당)											
4. 심사위원	<b>(기준)</b> 「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1. 평가위원 수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평가위원</td> <td>◦ 시간당 10만원 ※ 시간은 반올림하여 산정( 2.6시간→3시간)</td> </tr> </tbody> </table> 2. 심사수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내용 심사수당</td> <td>◦ 1부당 2만원</td> </tr> <tr> <td>발표 심사수당</td> <td>◦ 시간당 1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평가위원	◦ 시간당 10만원 ※ 시간은 반올림하여 산정( 2.6시간→3시간)	구분	지급액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10만원	심사수당은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에서 가감가능  여비는 인건비 항목의 방식을 준용함
구분	지급액												
평가위원	◦ 시간당 10만원 ※ 시간은 반올림하여 산정( 2.6시간→3시간)												
구분	지급액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10만원												

구분		기준			비고
비목					
인건비 (A)	5. 행사·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별 금액 적용			적용기준에서 ±15% 증감 조정 가능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지급 가능
		구분	단위	지급액	
		진행자	회	◦ 500,000원	
		촬영 감독	회	◦ 200,000원 ~ 500,000원	
		조명 감독	회	◦ 200,000원 ~ 500,000원	
		오디오감독	회	◦ 200,000원 ~ 500,000원	
		연출	작품	◦ 2,000,000원	
		작가	작품	◦ 5,000,000원 이하	
		배우	작품	◦ A급 : 2,000,000원 B급 : 1,000,000원 C급 : 500,000원 * A급(주연배우급) B급(배우경력10년이상) C급(그 외)	
		성우	작품	◦ 500,000원	
그 외	회	◦ 200,000원 이하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분 비목		기준		비고																				
인건비 (A)	6. 강사료	(기준) 「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하여 아래기준		여비는인건비 항목의 방식을 준용함  강의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3시간 편성 가능																				
		1. 강사료 기준 단가표(시간급)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특별강사</td> <td>특1급</td> <td>◦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시 매시간 30만원) *현직의 경우 최초 4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지급</td> </tr> <tr> <td>특2급</td> <td>◦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시 매시간 20만원)</td> </tr> <tr> <td rowspan="4">일반강사</td> <td>1급</td> <td>◦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td> </tr> <tr> <td>2급</td> <td>◦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8만원)</td> </tr> <tr> <td>3급</td> <td>◦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시 매시간 6만원)</td> </tr> <tr> <td>4급</td> <td>◦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시 매시간 3만원)</td> </tr> <tr> <td colspan="2">퍼실리테이터(FT)</td> <td>◦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특별강사	특1급	◦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시 매시간 30만원) *현직의 경우 최초 4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지급	특2급	◦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시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	2급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8만원)	3급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시 매시간 6만원)	4급	◦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시 매시간 3만원)	퍼실리테이터(FT)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	
구분		지급액																						
특별강사	특1급	◦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시 매시간 30만원) *현직의 경우 최초 4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지급																						
	특2급	◦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시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																						
	2급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8만원)																						
	3급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시 매시간 6만원)																						
	4급	◦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시 매시간 3만원)																						
퍼실리테이터(FT)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시 매시간 12만원)																						
		※ 등급별 해당인원 및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1] 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준용																						
경비 (B)	1. 식비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20. 1.) 적용		간담회비와일반식비 중복반영은 불가 간담회 수는 전체 식사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식비</td> <td>1인 1식</td> <td>8,000 (원)</td> </tr> <tr> <td>간담회 식비</td> <td>간담회 시, 1인 1식</td> <td>20,000 (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지급액	일반식비	1인 1식	8,000 (원)	간담회 식비	간담회 시, 1인 1식	20,000 (원)											
구분	기준	지급액																						
일반식비	1인 1식	8,000 (원)																						
간담회 식비	간담회 시, 1인 1식	20,000 (원)																						

비목	구분	기준	비고																			
경비(B)	2. 다과비	<p>(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0. 2.)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3. 식비 및 간담회비 적용</p> <p>1. 간담회비(다과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td> <td>4,000 (원/인)</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지급액	내용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 (원/인)														
	구분	기준	지급액																			
	내용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 (원/인)																			
	3. 숙박비	<p>(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2020. 4. 1.)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p> <p>1.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비(지역별 상한액 有)</li> <li>-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비(지역별 상한액 有)</li> <li>-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li> </ul>																
구분	지급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비(지역별 상한액 有)</li> <li>-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li> </ul>																					
4. 여비 교통비	<p>(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20. 1.) 적용</p> <p>1. 국내여비</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운임</th> <th>선박운임</th> <th>항공운임</th> <th>자동차운임</th> <th>일비(1일당)</th> <th>식비(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 실비(일반실)</td> <td>◦ 실비(2등급)</td> <td>◦ 실비</td> <td>◦ 실비</td> <td>◦ 20,000</td> <td>◦ 20,000</td> </tr> </tbody> </table> <p>2. 국외여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국외 항공운임</td> <td>◦ 2등석 정액</td> </tr> <tr> <td>국외 여비</td> <td>◦ [참고3]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식비(1일당)	내용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20,000	구분	지급액	국외 항공운임	◦ 2등석 정액	국외 여비	◦ [참고3]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식비(1일당)																
내용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20,000																
구분	지급액																					
국외 항공운임	◦ 2등석 정액																					
국외 여비	◦ [참고3] 국외 여비 지급표를 적용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분 비목		기준			비고
경비 (B)	5. 도서 인쇄비	(기준) 기존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산정방식을 준용 적용단가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금액에 기준년도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 부가세 등 적용 (※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참고3] 2005 인쇄요금(조달청)의 내용 참고)			
	6. 무대 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참조			적용기준에서 10% 증감 조정 가능
		구분	지급액		
		직전년도 무대동일	◦ 최근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무대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격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			
7.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적용기준에서 15% 증감 조정 가능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행안부 예정가격작성요령 참조)			
8. 현수막	(기준) 제작되는 현수막 형태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적용			1회성 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수막 으로 사용함	
	구분	현판 제작 (1식)			현수막 제작(1개)
	금액	A급 100만 원	B급 70만 원		C급 50만 원 이하 ◦ 50,000(원/개) 이내 적용
※ A급: 3천명이상 B급: 2천명 이상 C급: 2천명 미만 행사					

구분 비목		기준			비고						
경비 (B)	9.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기존과 동일 장소</td> <td>◦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td> </tr> <tr> <td>신규 장소</td> <td>◦ 견적가격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기존과 동일 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장소	◦ 견적가격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구분	지급액									
	기존과 동일 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장소	◦ 견적가격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10. 장비 및 차량 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기존 행사</td> <td>◦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td> </tr> <tr> <td>신규 행사</td> <td>◦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11. 시상금	(기준)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시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부담으로 지출 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시상금 총액</td> <td>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td> <td>2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td> <td>200만 원 이하</td> </tr> </tbody> </table> <p>A등급: 3천명 이상 , B등급 : 1천명 이상, C등급 : 1천명 미만</p>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시상금 총액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시상금 총액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12.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기존 행사</td> <td>◦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td> </tr> <tr> <td>신규 행사</td> <td>◦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최소가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최소가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		
구분	지급액										
기존 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적용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규 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최소가 적용 (행안부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

구 분		기 준	비 고
비 목			
경 비 (B)	13. 소모품비	(기준) 소모품비를 제외한 사업비 총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	
		구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의 합산액	◦합산 금액의 5% 이내

### 3) 법정운영비 보조 원가산정 기준표

구분		기준	비고
비목			
법정운영경비	1. 직접 인건비	(기준) 연도별 단체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적용	
	2.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3. 공공요금	(기준) 직전연도 지급액에 생산자 물가지수 반영하여 적용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에 3% 범위 내에서 편성	
	4. 기관 운영비	(기준) 직접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합산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편성	

※ 법정운영단체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는 민간 경상사업보조 원가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예산을 산출함

## 제5절 원가산정기준 적용 제도화 방안

### 1.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민간보조금 편성기준 근거 마련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표준단가 기준을 매년 제시하고 예산편성 시에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반영 안

- 제 조(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 ① 충청남도지사는 민간지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7인 이하의 관련 전문가로 보조금 단가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매년 7월 내지 8월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단가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 2.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매년)

- 전문가 등으로 보조금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연도 민간 보조금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매년 7-8월)

### 3. 시군에 보조되는 도비 보조금 동기준 적용

-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도 보조금 표준단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명시하고 권고



## 연구모임 참여자

---

### □ 도의회 의원

-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 조길연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 김 연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 □ 참여위원

- 강인재 (사)재정성과연구원 원장
-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김종수 충청남도 재정지원팀장
- 김진기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책임연구원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박종철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팀장
- 박종혁 NPI-LAB 원장
- 신필승 충청남도 보조금관리팀장
- 윤정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회계연구팀장
- 이세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이종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 임재영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원
-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 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